

제433회 국회
(임시회) **대미투자특별법처리를위한
특별위원회 회의록** 제 2 호
(법안심사소위원회)

국회사무처

일시 2026년3월5일(목)

장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소회의실

의사일정

1.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김병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555)
2.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홍기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959)
3.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진성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180)
4.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박성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497)
5.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안도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548)
6.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정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352)
7.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박수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594)
8.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김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596)
9.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정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681)

상정된 안건

1.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김병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555) ... 2
2.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홍기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959) ... 2
3.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진성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180) ... 2
4.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박성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497) ... 2
5.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안도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548) ... 2
6.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정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352) ... 2
7.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박수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594) ... 2
8.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김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596) ... 2
9.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정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681) ... 2

(10시01분 개의)

○소위원장 정태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3회 국회(임시회)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 제2차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최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9건의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을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 발언 시에는 마이크를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석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은 후에 발언해 주시고 발언 전에 소속, 직위와 성명을 말

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김병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555)
2.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홍기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959)
3.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진성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180)
4.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박성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497)
5.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안도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548)
6.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정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352)
7.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박수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594)
8.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김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596)
9.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정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681)

(10시02분)

○소위원장 정태호 의사일정 제1항부터 9항까지 이상 9건의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오늘 다섯 번째 한미전략투자공사부터 시작이지요?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예.

○소위원장 정태호 잘하면 오늘 내로 끝낼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속도를 냅시다.

먼저 최병권 수석전문위원께서 소위 자료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144페이지입니다.

한미전략투자공사에 관한 규정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정안은 전략적 투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한미전략투자기금의 운용을 전담할 한미전략투자공사를 설립하려는 것입니다.

제정안에서는 공사의 자본금, 임원 구성, 사장 임명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고 공사가 수행하는 업무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사는 설립 등기일로부터 20년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운영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147페이지 결정사항 첫 번째 사항에 기금 설치를 위한 한미전략투자공사의 신설 여부입니다.

김건 의원안을 제외한 8개의 제정안은 기금의 운용을 전담할 한미전략투자공사를 설립하려는 것인데 기금을 설치하기 위해 새로운 공사를 설립할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먼저 결정할 필요가 있겠다고 하겠습니다.

검토의견 말씀드리면 공사 신규 설립의 기대효과와 기존 정책금융기관의 활용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사의 신규 설립 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사의 신설은 상당한 행정비용을 수반하고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공사를 설립한 입법례는 없고 단기간 내 우수 인재나, 운영 종료 시 직원의 고용승계와 법적 책임 승계 등의 처리에서 책임 소재의 불명확성이 생길 수 있는 우려가 있고 또한 MOU의 전제가 실질적으로 변경될 수 있는 상황에서 기존 정책기관들을 최대한 유연하게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150페이지입니다.

따라서 직접투자와 대출·보증 등의 기능을 복합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공사를 신설하는 방안과 신속하고 탄력적인 대미 투자를 위해 기존 정책금융기관을 활용하는 방안의 장단점을 고려해서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정태호 이 필요성은 어저께 사실상 합의를 한 거 아닌가요, 설치하는 걸로?

○강승규 위원 아니지요. 합의 안 했지요, 아직. 뒤에서 논의하자 그랬지요.

○소위원장 정태호 말씀하십시오, 정부 입장.

○재정경제부제1차관 이형일 정부는 공사 설립을 원안으로 유지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부분은 국가 재정과 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책임 있는 전담기관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기존의 정책금융기관의 활용과 관련해서는 각 기관들의 고유업무와 전문성이 현재 기금을 운용하는 공사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새로운 기관이 필요하고 또 해당 기관이 이 업무까지 같이 할 경우에 본연의 역할에 있어서 차질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수출입은행이나 KIC 등의 원님들 안에 나온 여러 가지 업장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하는 일이 다르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표적으로 수출입은행의 경우에는 대출·보증을 중심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KIC는 포트폴리오 투자를 중심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우리가 생각하는 이 기금의 운용과는 차이가 난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기존의 정책기관이 이걸 수행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건전성에 영향을 주거나 본연의 업무에 있어서 리스크가 노출되거나 부정적인 영향도 예상이 되는 상황입니다.

이상 말씀을 마칩니다.

○소위원장 정태호 위원님들 의견 주세요.

○허영 위원 정부 측에 몇 가지 여쭙보겠습니다.

이 일을 기존 조직 내에서 서브 잡으로 해서 동일 공무원이 다른 업무를 하면서 할 수 있는 일입니까?

○재정경제부제1차관 이형일 이거를 위해서는 별도의 전담 업무를 맡아야 됩니다.

○허영 위원 그렇지요? 기존 조직에 두더라도 기존의 업무를 배제하고 새롭게 임무를 줘서 그 일만 전담해야 되는 상황이지요?

○재정경제부제1차관 이형일 예, 굉장히 중요한 업무고……

○허영 위원 서브 잡으로는 할 수 없지요?

○재정경제부제1차관 이형일 그렇게 생각합니다.

○허영 위원 고용승계라고 하는 것이 만약에 공사를 설치해서 이쪽으로 파견됐더라도 이 임무가 종료되면 다시 복귀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재정경제부제1차관 이형일 예.

○허영 위원 그다음에 법적 책임이라고 하는 것은 이 임무가 종료돼서 해산이 되더라도 그때 벌어진 불법적인 일들은 공소시효하에서 얼마든지 책임질 수 있는 일이지요?

○재정경제부제1차관 이형일 예, 행위 당시의 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허영 위원 그리고 KIC나 다른 기관에서 업무를 하더라도 전담의 필요성 때문에 별도

의 조직을 꾸리거나 신규 채용하거나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지요?

○재정경제부제1차관 이형일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허영 위원 또 공간도 별도의 행정비용이 똑같이 들어가지요?

○재정경제부제1차관 이형일 예, 비공개를 전제로 일을 해야 됩니다.

○허영 위원 다른 기관에 설치를 해도 행정비용 들어가는 건 거의 똑같지 않습니까?

○재정경제부제1차관 이형일 그렇게 봅니다.

○허영 위원 이상입니다.

○박지혜 위원 관련해서 방금 KIC 말씀을 하셨는데요, KIC의 기존 인력들 중에는 대체 투자나 그린필드 투자에 대한 전문성은 없다는 거 아닌가요?

○재정경제부제1차관 이형일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강승규 위원 제가 좀 묻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프로젝트가 시작돼서 공사가 설립되든 아니면 기존 기관에 배치를 하든 지금 하는 업무들이 새로운 인력을 채용해서, 그러니까 정부기관도 아니고 KIC나 수출입은행 등 기존에 하던 기관 이외의 다른 어딘가에서 새로운 인력을 채용해서 훈련 받고 파악하고 그런 일을 맡을 만한 인력들이 어디 다른 데 있어요? 어디에 있어요? 만약에 기관을 설립한다, 공사를 설립한다 그러면 어디에서 채용하실 거예요? 그 인력들이 어디서 오나요? 대개 다 KIC나 수출입은행이나 우리 정부기관 파견 나가고 그럴 거 아니에요?

○재정경제부제1차관 이형일 일부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만……

○강승규 위원 일부가 아니라 주축이 누가 되는 거예요? 공사를 설립할 때 주축 멤버가 누구예요? 지금 다 기존 정부 관계자나 주변에서 하고 있는 사람들이 하는 거 아니겠어요?

○재정경제부제1차관 이형일 그분들을 실제로 받아서 오면 그 업무, 책임을 전담할 수 있게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강승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책임을 맡든 하여튼 기존의 정부 및 정부 산하기관 등에서 일하던 사람이 다 모여서 할 텐데 그것을 왜 꼭 굳이 공사라는 것을 새로 만들어서 하려고 하나 이거지요.

○재정경제부제1차관 이형일 그거는 책임성 강화입니다. 이 업무는 한쪽이 아니고 여러 군데 흩어져 있을 수도 있는데 그렇게 되면 도대체 어떻게 관리를 할 수 있을지, 한 기관이……

○강승규 위원 그렇지요. 책임성 강화도 보면 실제 공사에서 하려고 하는 것 운영위원회나 사업관리위원회 등 정부기구에서 다 의사결정을 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재정경제부제1차관 이형일 그런데 그 운영위원회를 서포트하는 조직이 공사입니다.

○강승규 위원 그러니까. 그런데 그들이 파견 나와서, KIC나 이런 쪽에 파견 나와서 하면 그게 책임성이 떨어져요?

○재정경제부제1차관 이형일 그것보다도 한 기관에 모여서 같이 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책임을 관리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군데 흩어져 있으면 이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지를 구분하기가 어려워집니다, 나중에.

○강승규 위원 아니, 제가 어제 또…… 운영, 그러니까 책임 기관을 분산해서 재경부

와 산업부가 사업과 의사결정 구조를 나누어 놔는데 실제 그런 데서는 또 책임을 서로 미룰 수 있는 구조인데 한 기관에 모아 놓았다고 해서, 공사로 모아 놓았다고 해서 책임성이 강해진다?

아니, KIC나 이런 데에서 외평기금 관리하는데 거기에 현장 업무 등을 하는 기구를, 태스크포스를 붙이면 지금 일본도 그렇고…… 일본은 우리보다 훨씬 규모가 큰 데도 그러잖아요. 그러면 일본은 책임성이 없나요? 일본은 공사를 만들지 않고도 그렇게 하는데 거기는 더 비효율적인가요? 그렇게 생각하세요?

저는 이것을 굳이 공사를…… 지난번에 정인교 전 통상교섭본부장도 그렇고 일을 해 본 사람들이잖아요, 그분들은. 제가 또 한 번 통화를 하면서 물어보니까 다 그 사람들이 하는 거래요. 지금 하는 것처럼 이 기관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을 하는 건데 공사 만들어 놓으면 나중에 엄청난 암 덩어리만 될 거라고 그분은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이게 굉장히 가변성이 많은 투자 프로젝트인데 엄청난 규모의 공사를 왜 굳이 만들려고 하는지…… 지금 벌써 다 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지요?

○재정경제부제1차관 이형일 위원님, 나중에 공사를 좀 더 논의해 가면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만 여기는 제한된, 원안에 있는 임원의 수보다도 더 많이 줄일 거고요. 실제 공사 인력도 50명 정도밖에……

○강승규 위원 임원의 수는 왜 이렇게 많이 넣었어요?

○재정경제부제1차관 이형일 그것도 다 저희가 줄일 겁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공사를 거대한 규모로 운영할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아주 최소한으로 운영할 예정이고요. 말씀하신 그런 것보다는 저희는 이것이 여러 기관하고 관련돼 있기 때문에 그 기관에서 받아서 한곳에 모여서 집합된 조직에서 책임성을 강화하는 거지 여러 군데 흩어지면 나중에 책임을 따질 때도 애매해지기 때문에 오히려 이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강승규 위원 저는 정리만 하고 지금 어차피 정부가 하실 일이니까 하는데, 제가 정리를 하면 일단 이 프로젝트의 기간도 굉장히 제한된 기간이에요. 상설 공사를 만들어서 할 프로젝트가 아니라고 분명히 봐요.

그다음에 업무도 지금 무슨 새로운 업무를 개발하고 무슨 잡 오리엔테이션을 해서 펼쳐야 되고 이런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일도 아니에요. 기존에 업무를 지금 다 하고 있어. 재정부하고 산자부하고 외교부하고 다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다 실제 의사결정도 할 거야. 어떤 구조든, 위원회를 만들든 아니면 그냥 태스크포스를 만들든 어떤 의사결정을 다 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외부에서 조력을 받아 봐야 아주 실무적인 서포팅, 실무 능력이야. 그것은 현장에서 회의 진행하는 것 의사결정하는 데 자료 모아 주고 하는 정도일 거예요. 그리고 전문가들이 그것에 대해서 평가할 텐데 그것도 다 기존에 무보라든지 KIC에 다 있다고 봐요, 저는.

그런 것을 굳이 공사를 만든다는 것이 솔직히 이해가 안 가고 김건 의원 같은 경우도,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이것은 태스크포스지 공사 조직이 아니더라고 다 법안도 냈고 그렇게 주장들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정부 기구에서 오래 일을 안 해 봤지만 이런 것은 아주 단기간의 의사결정의 문제이지 어떤 기존 시스템이 짜여진 조직에서 엄청난 서포팅을 받아야 하는 그런

업무가 아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저는 공사 설립에 대해서 찬성하지는 못하겠고요. 정부에서 그래도 해야 된다면 할 수 없지요, 그거야 지금 짧은 기간에 해야 된다고 하면 그렇고. 하더라도 엄청난……

이것은 그냥 대부분 다 정부기관에서 파견 나가서 일시적으로 딱 모여서 의사결정을 하고 나중에 관리 업무 이것은 일도 아니에요, 그것 관리하는 것. 투자 결정 나고 나면 제한된 의사결정 사항밖에 남아 있지 않기 때문에 투자가 결정되고 나면 그것은 큰 일거리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규모 공사 설립은 하여간 절대 반대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정태호 박수영 간사님.

○박수영 위원 정부 측에 몇 가지 확인 좀 하겠습니다.

우리 당 의원님들 대부분과 김건 의원님 안을 찬성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시기 때문에 이 부분은 분명히 정리를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선 투자공사라는 것이 SPV가 맞는 거지요? 스페셜 퍼포스 비이클(Special Purpose Vehicle)이지요?

○재정경제부제1차관 이형일 투자공사요?

○박수영 위원 예, 투자공사. 공사가 어떤 사업에 투자할 것인가는 한미 협의위를 통해서 산자부 장관이 위원장인 사업관리위원회에서 1차 결정을 하는 것이지요, 어떤 사업에 투자할 것인가?

○재정경제부제1차관 이형일 상업적 합리성을 검토하는……

○박수영 위원 그러니까 상업적 합리성을 검토하고 그것을 운영위원회로 넘겨서 기재부 장관이 위원장인 운영위원회에서 그러면 이 사업을 우리 투자하자, 최종 결정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면 기금을 가지고 있는 공사는 일종의 비이클이에요. 즉 투자 결정이 된 것에 대해서 그러면 돈을 어디서 모아서 어떻게 받아 가지고, 외환보유고 운용 수익 같은 걸 받아 가지고 투자 결정이 된, 정부가 결정한, 부총리가 결정한 사업에 대해서 돈을 넘겨주는 이런 역할을 하는 일종의 비이클이란 말이에요. 이게 투자 결정까지, 의사결정까지 하는 조직은 아니지 않습니까?

○재정경제부제1차관 이형일 그 운영위원회를 서포트하는 겁니다. 운영위원회가 결정할 수 있도록……

○박수영 위원 그러니까 의사결정은 2개의 위원회, 산자부 장관이 위원장인 사업관리위원회와 기재부 장관이 위원장인 운영위원회에서 한단 말이에요. 이것은 단순히 집행 업무, 그 자금을 어떻게 받아서 어떻게 보내 주고 하는 걸 하는 것이지 매우 중대한 의사결정을 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맞습니까?

○재정경제부제1차관 이형일 예를 들면 경제장관회의가 있으면 그 밑에 재경부 조직에서 경제장관회의 안건을 다 붙여서 만들어 오면 그것을 리뷰를 하고 이것을 상정합니다, 상정 올릴 수 있겠습니까 하면 상정하고 보고하고 그런 내부 과정을 거치는 기능입니다.

○박수영 위원 아니, 그것은 기재부가 다 하는 것 아니에요? 운영위원회 그다음에 산업부에 있는 사업관리위원회…… 이것은 기재부와 산업부 공무원들이 다 서포트하는 것 아닙니까?

○재정경제부제1차관 이형일 기본적으로 사업관리단이 만들어서 상업적 합리성이 있다고 넘어오면 그 자료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이게 잘 정리가 됐는지를 볼 거고요. 그리고 재무적 사항과 외환 사항까지 검토한 사항을 갖고 올리게 되는데……

○박수영 위원 그러면 재경부는 무슨 역할을 합니까? 장관만 위원장 맡고 있고 그 장관은 아무도 서포트를 안 하나요? 그 검토를 공사에서 해야 된다?

○재정경제부제1차관 이형일 공사에서 하는 거지요.

○박수영 위원 기재부는 그러면 뭐 해요?

○재정경제부제1차관 이형일 이 공사가 별도 전담기구로 되는 거니까요.

○박수영 위원 기재부는 아무 터치도 안 하고 장관만 이름을 빌려주는 겁니까?

○재정경제부제1차관 이형일 기재부는 물론 장관 서포트 사항을 같이 하게 되겠습니다.

○박수영 위원 왜 이중, 삼중으로 그렇게 합니까?

○재정경제부제1차관 이형일 그런데 기본적으로는 공사가 그 일을, 서포트 조직을 하는 거지요, 그리고 실제 집행도 관리하고.

○박수영 위원 아니, 그러면 산자부차관님, 거기 사업관리위원회는 누가 서포트합니까?

○산업통상부차관 문신학 사업관리위원회는 사업추진단에서 서포트를 합니다, 사업관리단에서.

○박수영 위원 사업관리단이라고 어제 만들 거냐 말 거냐, 미국에 투자단을 만들 거냐 말 거냐 하는 것 다시 검토해 오기로 한 부분인데 어쨌든 그것은 산업부 안에 있는 조직이지요?

○산업통상부차관 문신학 예, 그렇습니다.

○박수영 위원 산업부가 장관을 지원하는 것 아닙니까?

○산업통상부차관 문신학 산업부의 직제 내에서 행안부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박수영 위원 그러니까 그것 산업부 공무원들이 하는 것 아닙니까?

○산업통상부차관 문신학 산업부 공무원도 포함되어 있고 또 다른 부처 공무원들도 파견을 받으려고 안에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박수영 위원 아니, 어쨌든 산업부장관을 지원하는 조직들이, 공무원들이 있는 것 아닙니까?

○산업통상부차관 문신학 예, 그렇습니다.

○박수영 위원 저는 운영위원회 장관, 즉 기재부장관도 기재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된다고 봐요. 공사에 여기저기 모은 사람들이 얼마나 제대로 서포트를 할 수 있겠나. 기재부 공무원들이 책임지고 해야, 장관이 책임지고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재정경제부제1차관 이형일 저희 기재부는 이 업무를 하기 위한 조직은 과 하나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모든 걸 다 할 수는 없고 공사에서 이것을 주도적으로 검토를 하고 올라가는 조직입니다.

○박수영 위원 그러면 공사의 직원이……

이 전문성 있는 직원들은 어디서 데려와요? 기재부 공무원들이 아니라 공사가 하면 기재부는 그러면 제도만 만들어 놓고 부총리만 보내 놓고 손 떼고 구경하겠단, 나중에 책임도 못 지겠단 뭐 이런 겁니까?

○재정경제부제1차관 이형일 제도적인 측면을 같이 저희는 보는 거고요. 개별 프로젝트

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공사가 리뷰를 해서 위원회에 올리게 되고 각 위원회……

○박수영 위원 그러면 이 프로젝트를 리뷰할 수 있는 운영위원회 사람들은 산업부가 가지고 있는 사업관리위원회보다 더 우수한 사람들을 모아야 되는 거네요? 그렇습니까?

○재정경제부제1차관 이형일 예, 투자에 대해서 전문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와야 됩니다.

○박수영 위원 그러면 산업부 검토한 것은 아무 쓸모도 없고?

○재정경제부제1차관 이형일 그것은 아닙니다. 어제 말씀드렸듯이 기본적으로 상업적 합리성에 대한 검토는 사업관리위원회에서 하게 되는 거고요. 저희들은 그냥 그것을 무던히 받지도 않겠지만 그리고 전부 다 새로 리뷰하는 건 아니지만 그 관련된 자료를 보고 이게 제대로 됐는지 체크는 최소한 해야 되는 거지요. 거기다가 여러 가지 나머지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하는 최종 의사결정기구입니다.

○박수영 위원 그러니까 산업부가 하는 부분을 충실하게 했는지를 다시 점검하겠단?

○재정경제부제1차관 이형일 최소한 안전이 오면 안전을 리뷰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안전을 새로 작성하지는 않더라도?

○박수영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할 수 있는 인력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나라에?

○재정경제부제1차관 이형일 그게 공사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박수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어디서 데려옵니까? 산업부보다 더 잘 검토할 수 있는 인력이라는 걸 어디서 데려옵니까?

○재정경제부제1차관 이형일 더 잘보다는, 완전히 그걸 싹 다 본다는 뜻이 아니고 최소한 그 자료의 팩트를 기초로 했을 때 이게 잘 정리가 됐는지는 점검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박수영 위원 그걸 기재부가 서포트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기재부의 좋은 공무원들 봐두고 뭐 합니까?

○재정경제부제1차관 이형일 저희 과가 사무관 셋 정도밖에 안 됩니다.

○박수영 위원 과가 문제가 아니지. 이 큰 사업을 하면 TF를 만들어서 최소한 트럼프 임기 중에 사업 결정할 것 아닙니까? 그때까지는 기재부가 TF를 만들어서 달라붙어야 될 것 아닙니까?

○재정경제부제1차관 이형일 그렇게 노력은 하겠지만 결과적으로 책임성 있는 기관인 공사가 있어야 된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공무원들 계속 순환보직도 되고 그렇기 때문에……

○박수영 위원 책임성 얘기하면 그러면 기재부는 책임 안 지겠다 그런 얘기입니까, 공사가 책임 다 지고?

○재정경제부제1차관 이형일 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책임을 집니다.

○박수영 위원 그러니까 그 서포트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재정경제부제1차관 이형일 그렇습니다. 그런 서포트는 저희가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박수영 위원 그러면 지금처럼 단순히 과 하나 가지고 서포트하겠다는 생각을 가지면 안 되고 TF를 적어도 국장급 정도 만들어서 서포트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재정경제부제1차관 이형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수영 위원 그러면 저는 사실상 공사는 비이클에 불과하다. 산자부가 결정하고 기재부가 결정하고 2개 위원회를 거쳐서 결정하는 사업에 대해서 이제는 돈을 받고 전달해주는 돈 관리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공사는 클 필요가 없다, 만든다고 하더라도.

○재정경제부제1차관 이형일 그것은 동의합니다.

○박수영 위원 그렇다면 할 필요 없지 않느냐는 게 우리 당 많은 의원들의 얘기인데 저는 책임성의 측면에서 봐서 산업부장관, 기재부장관 그리고 돈을 운용하는 공사, 여기를 하나로 묶어서 책임지는 구조는 필요하겠단 이런 생각이 들어서 공사를 만드는 데는 찬성하고 제가 법안을 냈지만 이 공사는 최소한으로 운영해야 된다, 일종의 비이클에 불과하다. 책임을 묻는다면 공사 사장이 아니라 나중에 기재부장관이 책임지고 산업부장관이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두 위원회를 거쳐서 산업부가 결정하고 기재부가 오케이 했는데 공사 사장이 안 된다고 반대합니까? 그건 불가능한 구조잖아요.

○재정경제부제1차관 이형일 맞습니다. 운영위원회가 최종적인 의사결정 책임을 지는 건 맞습니다.

○박수영 위원 그러니까 공사는 비이클이라는 얘기를 제가 자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공사를 장관급 사장으로 한다, 임원을 5명 한다, 상임감사를 둔다, 직원을 몇백 명 한다는 얘기들이 처음에 들었는데 지금 차관님은 50명 이내로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재정경제부제1차관 이형일 예, 임원도 줄일 생각입니다.

○박수영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비이클이니까 최소화한다는 생각을 하고 책임은 결국 차관님을 포함한 기재부장관, 전체가 책임진다는 각오로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재정경제부제1차관 이형일 예,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정태호 허영 위원님.

○허영 위원 몇 가지만 보충적으로……

당연히 방만하지 않고 정말 콤팩트하게 구성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우려를 많이 지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존에 죽 논의해 왔던 전제들이 있는데 하나의 TF가 3500억 달러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기금을 운용할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전문성도 떨어질 거고?

○재정경제부제1차관 이형일 예, 아무래도 TF에 오면 책임성이 떨어질 겁니다.

○허영 위원 그리고 공사와 사업관리위원회, 운영위원회, 이게 어떻게 보면 보텀업 단계에 있어서의 책임들을 다 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구조, 거버넌스 체계가 지금 만들어져 있는 거고.

그다음에 20년 정도의 기간을 가지고 공사를 설치했지만 여러 가지 국제관계의 변화에 따라 가지고 활동 기간들이 얼마든지 자체적인 의사결정을 통해 가지고 그것이 종료될 수도 있고 더 길어질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재정경제부제1차관 이형일 예, 이게 저희가 마일스톤에 따라 자금을 집행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사결정했더라도 진척도를 계속 체크하면서 돈을 줘야 됩니다.

○허영 위원 팩트시트 자체에 마일스톤 개념들이 다 들어가 있는 거니까……

○재정경제부제1차관 이형일 그래서 20년간 계속 이렇게 돌아갑니다.

○허영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너무 고정적이고 그런 개념으로 이해하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역대 이런 규모의 기금을 단일 TF 단위로 운용한 적이 없지 않습니까?

○박수영 위원 역대 이런 규모가 없었지요.

○허영 위원 없기 때문에 좀 더 전문적이고 부처에서도 이런 것들을 담당할 아주 콤팩트한 전문조직들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재정경제부제1차관 이형일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정태호 제가 개념을 좀 명확하게 하고 갔으면 좋겠는데요.

지금 이 공사를 설치하는 것은 기금을 운용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거잖아요?

○재정경제부제1차관 이형일 예.

○소위원장 정태호 그런데 그 기금은 국가재정법에 의해서 관리되는 기금이 아니잖아요?

○재정경제부제1차관 이형일 예.

○소위원장 정태호 그리고 그 기금은 여러 가지 프로젝트에 투자를 하는 거고. 그렇잖아요?

○재정경제부제1차관 이형일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정태호 그런데 이게 일본하고 다른 게 일본은 민간에서 투자를 하는 거지만 이것은 정부가 사실상 돈을 조성해 가지고 개별 프로젝트에 투자를 하는 거잖아요, 차관님?

○재정경제부제1차관 이형일 예, 일본은 민간도 투자할 수 있도록 룬이 열려 있다고 합니다.

○소위원장 정태호 그렇잖아요. 그게 중심인데 우리는 전적으로 국가가 돈을 모아 가지고 개별 프로젝트에 투자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런 다양한 프로젝트에 투자를 하기 위해서 기존에 일상적 업무를 수행하는 정부부처가 그 프로젝트 하나하나를 관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잖아요. 그리고 이게 장기간에 걸쳐서, 20년에 걸쳐서 관리를 해 나가야 되는 거고.

그리고 지금 이게 또 여러 부처가 걸쳐 있는 사업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이걸 일관성 있게 그리고 구체적으로 관리할 주체가 필요하다. 기금도 관리하고 프로젝트도 관리하고 정부의 각각 부서의 의견들이 하나로 모아질 수 있는 그 그릇이 필요한 거잖아요.

○재정경제부제1차관 이형일 예, 맞습니다.

○소위원장 정태호 그리고 그걸 운영하는 운영위원회가 있는 거고.

○재정경제부제1차관 이형일 최고 의사결정기구입니다.

○소위원장 정태호 그래서 이게 필요한 거잖아요.

○재정경제부제1차관 이형일 예.

○소위원장 정태호 다만 박수영 간사님 말씀처럼 이게 비이클의 기능을 하기 때문에 규모는 최소화시킬 필요가 있다는 지적을 하시는 거고.

○재정경제부제1차관 이형일 그 부분은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정태호 그렇게 정리를 명쾌하게 해 주셔야 되는 거지요.

○차규근 위원 기본적으로 국회의 책무가 정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 이런 기구를 만드는 것에 대해서 국회가 이런 우려를 제기하고 비판적으로 보는 것은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사실 강승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기존의 KIC나 무보나 이런 네트워크나 인력들을 활용할 필요성, 지난번에 공청회 때 정인교 전 본부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초기에는 그런 인력들을 활용할 필요성이 상당히 있지 않는가 저도 공감을 합니다.

다만 투자하는 규모가 참 미증유의 투자 규모라는 측면에서 외람된 말씀입니다만 제가 행정부 경험을 좀 한 상황에서, 많은 분들 아시겠습니까마는 책임성이 분명하게 딱 정립이 되지 않으면 공사는 제대로 업무가 돌아가지 않고 회피하고 소극적이게 되는 그런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기존의 조직과는 별도로 이 어마어마한 규모의 투자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평가를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한 관리를 하는 별도의 기구는 필요하지 않는가.

다만 좀 전에 박수영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비대해지지 않고 가급적 슬림하게 하고 기존의 KIC나 무보나 이런 네트워크나 노하우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되는 그런 점에 대해서 혹시 입법적으로 문구를 약간 가미할 수 있다면 어떨까라는 의견을 저는 드립니다.

○강승규 위원 보충질의 좀 할까요?

○소위원장 정태호 짧게 해 주시지요.

○강승규 위원 혹시 이 공사가 설립된다면 거기에 공무원이나 아니면 KIC나 무보 등 공기관에서 파견직으로 채용할 수도 있나요, 파견으로?

○재정경제부제1차관 이형일 파견보다는 채용을 할 생각입니다.

○강승규 위원 다 신규로 하면 그 전문인력들을 다 어디서 구해 와요, 정부는 싹 빠져 있고? 정부나 지금까지 이 업무를 해 오던 기관은 다 빠지고 누가 오겠어요? 이것 한시적인 기구에, KIC나 이것의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국가기관이나 공기업 등에 주로 있을 텐데 그런 사람들이 아닌 다 신규 채용을 해 가지고 짧은 시간에 이런 전문인력을 어디서 채용해서 쓴다는 거지요? 그것도 이해가 안 가는데요.

○재정경제부제1차관 이형일 이런 조직에서도 이쪽으로 이직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요. 또 필요하면……

○강승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직했을 때 이 한시적 기구가 나중에 어떻게 될 것이냐에 대한 엄청난 우려를 지금 가지고 있잖아요. 그게 몇 년, 10년, 20년 가는 것도 아니고 실질적으로 딱 집중해서 일하는 기간은 삼사 년밖에 안 되는 건데, 그리고 나중에는 다 관리업무인데.

제가 늘 강조하는데 그런 부분을 생각할 때 자꾸 갈수록 어차피 정부는 책임을 회피하려는 것 같아요. 이런 기구 하나 만들어서 딱 세워 놓고 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해서 결정을 하고 위원회 결정사항이다 하고서는 정부는…… 나중에 이 투자사업에 다양한 문제가 나타날 텐데, 미국과 건건이 그냥 넘어갈 수가 없는 사업들이 계속될 텐데 그리고 그 결정 때마다 여러 가지 국민적 비난도 나올 것이고 그 사업이 진행되는 것마다 다양한 의견이 나올 텐데 그때 정부는 우리 공사 만들어서 공사에서 책임지고 하는 겁니다라고 빠

지려는 듯한 책임회피성 조직 신설이라는 저기를 지울 수가 없고.

○재정경제부제1차관 이형일 그것은……

○강승규 위원 그다음에 제가 또 정리하면 실제 이 인력들을 어디서 다 채용해서 하려면 계속 기구는 비대해질 것이고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채워 넣을 것이다, 의사결정에 도움도 안 돼요. 우려가 됩니다.

○소위원장 정태호 이러지요. 지금 충분히 그 문제점이 지적됐고요. 그리고 또 필요성도 이미 지적이 됐고. 여기서 결론이 나면 좋겠는데 현안들이 너무 많이 남아 있으니까 일단 그건 나중에 간사 간에 협의를 하는 걸로 하고요 넘어가지요.

○박수영 위원 아까 얘기한 것 중에 하나만 제가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차관님, 실장님이 파견 안 받고 전부 신규 채용하겠다고 뒤에서 답변을 주신 것 같은데 그건 근본적으로 재검토해 봐야 될 겁니다. 파견을 해야 우수인력을 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파견은 안 된다, 전부 신규다 이렇게 미리 예단하시는 건 조직운영상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재정경제부제1차관 이형일 다양한 방식으로 검토할 생각입니다.

○박수영 위원 차관님이 직접 검토하세요, 실장 얘기만 듣지 말고.

○재정경제부제1차관 이형일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정태호 그것은 일리가 있는 지적입니다.

다음.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151페이지입니다.

결정사항 두 번째로 공사 자본금 규모 및 출자 주체입니다.

첫 번째, 자본금 규모 관련해서 김병기 의원안 등은 자본금을 3조 원으로 규정하고 있고 정부 등이 출자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안도걸 의원안은 자본금을 5조 원으로 규정하고 정부 등이 출자하는 것으로 규정돼 있고요. 박수영 의원안은 자본금을 1조 원으로 규정하고 정부가 전액 출자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첫 번째, 자본금 규모에 대해서는 공사 보증 범위하고 보증배수와 연계되므로 결정할 필요가 있는데요. 만약에 조선협력투자 1500억 불을 지원하기 위해서 보증배수 30배, 이것은 무보의 보증배수를 차용한 것입니다. 그다음에 1500억 불 중 40%를 보증한다고 보면 자본금이 한 3조 필요하고요. 그런데 1500억 불 중 정부에서 지원하는 보증비율을 70%로 가정할 경우에는 5조 원이 필요하게 됩니다.

박수영 의원안처럼 자본금을 1조 원으로 설정할 경우 초기 공사 설립에 소요되는 재정 부담을 경감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다만 향후에 대규모 보증수요 발생 시 안정적인 보증에 있어서 제약이 발생할 우려는 있습니다. 이걸 감안해서 검토하시면 되고요.

152페이지 두 번째 항목, 자본금 출자 주체입니다.

정부가 다른 기관 등과 함께 출자하는 경우에 정부의 재정부담이 줄어드는 대신 정부 외의 기관들, 한은이나 산은 같은 기관들의 출자에 따른 재무적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박수영 의원님처럼 정부가 전액 출자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이나 한은, 산은, 보완적인 출자 주체를 포함시킬지 말지에 대해서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정태호 정부 의견요.

○재정경제부제1차관 이형일 공사 자본금 규모는 수석전문위원님 말씀처럼 3조 원 정도가 저희는 적당하다고 생각해서 3조 원을 제안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자본금 출자자에 대해서 추가로 더 필요한 예비적 수요로 제가 ‘등’ 자를 담았는데 소위에서 논의해 주시면 ‘등’ 자를 빼는 것도 검토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정태호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박수영 위원 제가 법안을 발의했으니까 말씀을 드리자면 자본금 규모가 계산상 3조가 맞다고 하지만 이 투자가 바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처음에는 작은 규모로 시작했다가 투자사업이 자꾸 늘어나서 자본금을 증자해야 되겠다고 하면 그때 다시 개정을 해 주는 방법이 저는 낫다고 생각합니다. 처음부터 너무 크게 자본금 확충을 해 놓을 필요는 없다.

제가 산업위 근무할 때 한전의 자본금도 같은 방식으로 하고 보증배수도 늘려 주고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건 산업은행도 마찬가지고 수출입은행도 마찬가지고 투자수요가 점점 늘어 감에 따라서 국회가 빠른 속도로 법률을 개정해서 자본금을 증자할 수 있도록 해 줬거든요. 이 경우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사업이라는 게 몇 년에 걸쳐서 스케일을 봐 가지고 투자할 텐데 처음부터 막시엄인 3조로 할 필요는 없다 이런 생각이 있고요.

그다음에 ‘등’에 관한 부분은, 자본금을 출자하는 것은 동아시아에서 일본하고 대만하고 우리 세 나라가 미국하고 협상을 했는데 일본하고 대만은 정부가 한 푼도 투자를 안 해요. 기업만 투자를 합니다. 대만은 TSMC만 투자하고 일본은 5개인가 6개 기업이 각각 투자 사업들을 맡아서 투자하도록 돼 있어서 정부 돈이 하나도 안 들어가요. 우리는 정부 돈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정부가 평소 하던 재정지출을 줄여 가지고 출자를 해야지, 정부 이외에 ‘등’을 붙여 놓고 여기저기서 뜯어서 내게 만들고 압박해서 내게 하는 방식으로는……

처음에 정부가 2000억 불이나 부담하기로 한 것은 잘못된 협상인데 그거를 정부가 책임지지 않고 다른 기관에 떠넘기는 방식은 마땅하지 않다 해서 저는 법안을 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소위원장 정태호 다른 위원님이요.

○강승규 위원 박수영 위원님 의견에 저도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정태호 정부 입장은 어떠세요?

○재정경제부제1차관 이형일 ‘등’을 빼는 것을 저희가 수용하겠습니다. 다만 ‘등’을 빼면 정부만의 일이 되는 거고요. 그렇다면 출자를 하려면 예산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어차피 출자 규모를 결정하실 때 국회에서 다 통제권을 갖고 하게 됩니다.

작년에도 예비비로 이게 통과되면 대 줄 수 있도록 출자 재원을 이미 잡아 주셨습니다. 1.1조 원을 잡아 주셨지 않습니까? 그것을 넣게 되는데 그런 것을 감안한다면 어차피 국회에 통제권이 있기 때문에 좀 여유 있게 잡아 주고 실제로 투입되는 규모를 통제할 수 있다고 저는 보는 상황입니다만 그리고 또 이미 1.1조가 있으니까 1조는 너무 작아

보인다, 그래서 저희가 제안하는 것은 만약에 위원님이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한 2조 정도 해 놓고 그것을 넘어갈 때 다시 한번 법을 개정하는 것은 어떨까 싶습니다.

○소위원장 정태호 그러면 2조로 해 가지고 정부 전액 출자로?

○재정경제부제1차관 이형일 예, ‘등’ 자를 빼는 것으로.

○소위원장 정태호 그러면 그렇게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3번이요.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153페이지, 정관 기재사항 및 대통령령 위임 여부입니다.

첫 번째, 정일영 의원안에서는 정관 기재사항에 기금 운용 및 투자사업 집행에 대한 내부통제와 감독체계에 관한 사항을 추가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박수영 의원안에서는 다른 제정안과 달리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삭제하고 있어서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지 않습니다.

세 번째, 정태호 의원안은 다른 제정안과 달리 사무소·지사, 출장소에 있어서 사무소에 ‘주된’이라는 수식어를 추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154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첫 번째, 정일영 의원안의 정관 기재사항에 기금 운용 및 투자사업 집행에 관한 내부통제와 감독체계에 관한 사항을 추가적으로 규정함으로써 내부통제의 중요성을 법률 차원에서 분명히 하고 전략적 투자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보았습니다.

두 번째, 박수영 의원안의 대령에 위임사항을 빼는 부분은 제도 운영의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제고하는 장점이 있는 반면 향후 환경 변화에 따른 탄력적인 운영이나 보완이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다는 점도 고려해서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세 번째, 정태호 의원안처럼 주된 사무소를 규정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입법례가 그렇게 되어 있으므로 주된 사무소를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정태호 정부 의견이요.

○재정경제부제1차관 이형일 세 분 의원님안을 다 수용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정태호 너무 쉽게 넘어가는데……

○재정경제부제1차관 이형일 공사를 설립해 주시면 저희는 다 양보할 수 있습니다.

○소위원장 정태호 그러면 3개 다 수용입니다.

넘어갑니다.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대령에 위임 안 하는 것도 수용하신다고요?

○재정경제부제1차관 이형일 예, 수용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155페이지, 임원 구성 및 사장의 경력 요건과 임명 절차입니다.

제정안별로 임원 구성, 사장의 경력 요건에 차이가 있어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사 인원수에 대해 김병기 의원안 등은 5명 이내의 이사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고, 박수영 의원안은 3명 이내의 이사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회 추천 이사와 관련해 정태호 의원안은 이사에 국회가 추천한 1인이 포함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장의 경력 요건에 박수영 의원안은 사장이 10년 이상의 금융 또는 투자 관련 분야

중사 경력을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장 임명 절차에 대해서는 김병기 의원안 등이 운영위 심의, 재경부장관의 제청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고요. 안도걸 의원안은 재경부장관의 제청, 국무회의,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박수영 의원안은 운영위 심의, 재경부장관의 제청,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156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이사 인원수는 공사의 업무 범위, 업무량 등을 감안해서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고요.

국회 추천 이사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사의 수를 감안해서 가지고 검토를 하되 국회 추천 이사에 국회의 감시와 통제가 강화되고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효과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사장의 경력 요건으로서는 금융 또는 투자 관련 분야에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대미 투자업무는 조선, 반도체, 인공지능 등 다양한 분야와 관련이 있으므로 경력 요건을 금융·투자 관련 분야로 한정하지 말고 수정의견처럼 전략적 산업 분야 또는 금융 분야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 한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수정의견을 냈습니다.

다음으로 157페이지 인사청문 관련해서는 국회법에 따른 인사청문을 실시함으로써 정치적 중립성과 전문성을 검증하고 업무의 공정성을 보장하려는 취지로 이해가 되고.

다만 국회법에 따른 인사청문회는 공직후보자를 원칙으로 하고 있고 공무원이 아닌 자는 한은총재와 한국방송공사 사장뿐이라는 점과 전략적 투자 관련 최종 결정 사항은 재경부장관이 위원장인 운영위 심의·의결 사항이라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고요.

제일 밑에 운영위 심의·의결 및 국무회의 의결에 대해서는 운영위의 심의·의결 사항에 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이 있으므로 운영위의 심의·의결을 거치는 게 타당하다고 보았고, 국무회의를 거치는 것은 공공기관의 장 임명 시 국무회의를 거치는 입법 사례가 없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정태호 정부 입장이요.

○재정경제부제1차관 이형일 먼저 공사의 이사 인원수에 대해서는 박수영 의원님안을 수용하겠습니다. 3인으로 할까 합니다.

○소위원장 정태호 3인이요?

○재정경제부제1차관 이형일 예, 위원님 제안은 3인인데 그렇게 되면 사장 포함 3인이기 때문에 사장 외에 임원 2명이 추가가 됩니다. 그래서 재무를 담당하는 임원과 이 사업 전체를 전반적으로 보는 기술이사 이렇게 2명이면, 저희들은 이 정도 되면 운영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 사항입니다.

○강승규 위원 그러면 5명이네?

○소위원장 정태호 3명, 사장 포함 3명.

○박수영 위원 사장 플러스 기술이사과 재무이사.

○재정경제부제1차관 이형일 예, 그렇게 3명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이렇게 됐을 때 나중에 향후 리스크 관리 위원회 할 때 이사 수량 같이 논의할 필요는 있습니다만

일단 3인으로 수용하는 사항이고요.

그렇게 3인이 되면, 국회 추천 이사는 사실 5인일 때 제안이 돼 있는 내용인데요. 박수영 의원님안에는 국회 추천은 없는 것으로 제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인인 경우에는 국회 추천 이사는 제약적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사장의 경력에 대해서는 어제 임원에 대해서도 이미 이야기를 하셨기 때문에 수석전문위원의 대안에 대해서 수용하겠습니다.

인사청문회 관련해서는 수석전문위원님 말씀처럼 인사청문회 대상에 공무원이 아닌 자는 한은총재, KBS 사장 정도이고 이 부분은 공운법상 공공기관의 장에 가까운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인사청문회는 좀 더 재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소위원장 정태호 위원님 의견이요.

○차규근 위원 사장의 경력 요건 관련해서 금융 또는 투자 관련 분야로 한정돼 있는데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나와 있듯이 대미 투자업무가 조선, 반도체, 인공지능 등 다양한 분야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저는 금융 또는 투자 관련 분야에 한정하는 것이 조금 부실하지 않나……

○강승규 위원 수정의견, 그 밑에……

○박수영 위원 전략적 산업 분야로……

○차규근 위원 죄송합니다.

○재정경제부제1차관 이형일 수정의견에 수용하는 입장입니다.

○차규근 위원 그리고 인사청문회의 경우는 저는 수석전문위원 의견처럼 청문회 대상으로 하지 않는 것이 적절하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 인사청문회 제도가 약간은 정쟁적이고 도덕성 검증 위주로 흘러가는 경우가 많은데 이 분야야말로 그런 것을 떠나 가지고 능력 위주의, 그런 분이 사장이 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박수영 위원 안도걸 위원님 안 계시지만 인사청문회를 제안하는 법안을 냈던 사람으로서 차규근 위원님 의견에 동의하고요.

그다음에 전문위원 수정의견에 전략적 산업 분야 또는 금융·투자 분야인데 이것 순서를 바꾸면 문제가 있나요? 금융·투자 분야 또는 전략적 산업 분야로 바꾸면 문제가 있습니까?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문제없습니다.

○박수영 위원 저는 이게 아무래도 금융·투자 쪽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바꾸겠습니다.

○박수영 위원 바꿀 수 있습니까?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예.

○강승규 위원 그러면 국무회의는 안 거치는 거지요?

○박상웅 위원 국회 인사청문회만……

○박수영 위원 인사청문회 안 하고 그냥……

○강승규 위원 인사청문회 안 하고.

○박지혜 위원 운영위 심의를 거쳐서 그러면……

○소위원장 정태호 제가 정리를 해 드릴게요.

이사 인원수는 사장 포함 3인으로 하고, 그다음에 국회 추천 이사는 제가 제안을 했는데 안 하는 것으로 하고요.

○박수영 위원 죄송합니다.

○소위원장 정태호 박수영 간사님 의견으로 정리를 하고요.

사장 경력 요건은 금융과 전략 투자 분야 10년 이상이지요?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예, 10년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정태호 그렇게 하고, 인사청문회는 안 하는 걸로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다음이요.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160페이지, 공사의 업무 범위입니다.

공사의 업무 범위 관련해서 첫 번째, 정태호 의원안은 자금의 대출 등을 공사의 업무에서 제외하고 있고요, 박수영 의원님안도 자금의 대출 등에 대해서 공사의 업무에서 제외하고 있고. 두 번째, 정부·금융기관으로부터의 차입과 외국으로부터의 차입을 공사의 업무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161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자금의 대출 등을 제외하는 것은 공사가 조선험력 투자를 위해서 직접 대출 등을 하지 않도록 하고 기금에서 대출 업무 등을 실제로 하는 것으로 설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자금의 대출 등의 규정을 제외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고요.

두 번째로 공사의 업무 범위에서 정부·금융기관 및 외국으로부터의 차입을 제외하면 부채 확대 및 재정 위험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다는 점은 있지만 차입을 차단하면 자금 조달의 탄력성이 제한되어 정책 집행력이 저하될 가능성도 함께 고려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다음에 자구 수정 부분은 조사·연구 및 국내외 관련 기관과의 교류·협력의 범위를 의원안에 따라서 1호, 5호만 잡고 있거나 아니면 1호, 2호만 규정하고 있는데 앞에 있는 1호부터 5호까지, 관련 업무를 조사·연구하고 국내외 관련 기관과 교류·협력에 1~5호까지 다 필요하기 때문에 모두 포괄하도록 전문위원실에서 수정의견을 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정태호 정부 의견이요.

○재정경제부제1차관 이형일 일단 대출·보증 등을 삭제하는 의견에 대해서는 수용하겠습니다. 공사가 직접 대출하는 것은 저희가 판단컨대 특별히 그런 일이 없을 것 같아서 삭제하는 것을 수용합니다.

그리고 차입과 관련해서 이 부분은 수석전문위원께서도 이야기하신 것처럼 자금 조달을 탄력적으로 운용하기 위해서 차입이라는 부분은 저희들이 필요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비적 조항으로서도 남겨 뒀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를 들어서 채권 발행할 정도의 규모가 안 되는 작은 규모의 돈이 만약에 필요하다면 차입 외에는 달리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위해서 차입 규정은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수석전문위원이 말씀하신 자구 수정은 수용하겠습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소위원장 정태호 그러면 다 정리된 거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이요.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163페이지 결정사항 여섯 번째, 공사업무 위탁기관의 대통령령 위임 여부입니다.

제정안은 공사가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그 업무의 일부를 정책금융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인데 공사업무 위탁기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추가할 수 있는지 여부에 차이가 있습니다.

박수영 의원안을 제외한 제정안은 업무위탁 대상기관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규정하고 있어서 4호 이외에도 공사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기관을 대통령령으로 추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박수영 의원안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제외하고 있어서 4호 이외에는 다른 기관에 위탁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대통령령으로 추가할 수 있는 기관을 규정함으로써 필요시 정부 재량으로 위탁기관을 추가해서 다양한 기관의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대령으로 위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보다 긍정적으로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정태호 정부 의견이요.

○재정경제부제1차관 이형일 저희도 수석전문위원 의견처럼 업무 위탁의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열어 주시는 게, 필요한 사업 이슈가 생겼을 때 위탁할 수 있도록 해서 좀 탄력적으로 일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차규근 위원 위임조항을 두는 데 일단 동의를 하고요. 그와 별도로 여기에 보니까 3500억 불 중에 1500억 불이 조선해양 마스가 프로젝트에 투자되는데 한국해양진흥공사라는 공사가 있는데 그 부분이 여기 좀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 3500억 불 중에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부분인 만큼 한국해양진흥공사 정도는 여기 법안에 추가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은가 그 의견을 드립니다.

○소위원장 정태호 정부 입장 어때요?

○재정경제부제1차관 이형일 저희가 시행령에 있을 때 그것도 활용할 계획이 있었습니다. 지금 동의해 주시면 그것도 지금 추가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차규근 위원 법안에……

○소위원장 정태호 법에?

○재정경제부제1차관 이형일 예, 법에 넣는 것은…… 위탁할 수 있는 거니까 일이 없으면 있다가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소위원장 정태호 반대하시는 분은 없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넣는 걸로 하겠습니다.

○박수영 위원 그 밖에 다른 기관을 정부에서 생각하고 있는 기관 있습니까? 대령에 넣을 기관들이 또 있습니까?

○재정경제부제1차관 이형일 지금 현재는 말씀하신 해진공을 저희가 생각을 했었는데……

○박수영 위원 해진공 하나밖에 없는 거지요?

○재정경제부제1차관 이형일 그런데 추가로 계속 늘어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수영 위원 여지를 만들어 달라?

○재정경제부제1차관 이형일 예, 이것은 업무 위탁을 하면 오히려 사람을 줄일 수 있는 레버리지도 된다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위탁을 많이 하면 굳이 사람을…… 공사를 슬림하게 유지할 수 있는 그것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좀 열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박수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정태호 그러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은 남겨 두는 거지요?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예.

○소위원장 정태호 박수영 위원님 동의하신 거지요?

○박수영 위원 예.

○소위원장 정태호 수석님.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164페이지, 결정사항 7번 리스크관리위원회 설치 여부입니다.

정태호 의원안에서는 공사의 기금운용 및 전략적투자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무적·법률적·운영상 리스크를 사전에 점검하고 관리하기 위해 이사회 내 리스크관리위원회를 설치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한미전략투자공사는 대규모 재원이 투입되는 투자 및 기금 운용을 수행하는 주체라는 점을 감안할 때 리스크를 사전에 점검·관리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두는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165페이지입니다.

리스크관리위원회를 규정할 경우 정태호 의원안처럼 외부전문가에 대해서 비밀누설 금지 규정과 리스크관리위원회에 대한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규정을 함께 둘 필요가 있고 이와 같이 리스크관리위원회에 외부전문가가 지금 두 명 들어올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그 외부전문가에 대한 비밀누설 금지 그다음에 공무원 의제 규정하기 위해서는 정관 등이 아니라 법률에서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정태호 정부 의견이요.

○재정경제부제1차관 이형일 리스크관리위원회 조직 설치에 대해서 일단 저희는 수용하겠습니다. 아까 이사 수에 관련해서 정태호 의원님 안을 보면 두 명 이상을 하라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되면 실제 일을 하는 사람까지 포함되기 때문에 한 명으로 하면 아까 했던 재무이사가 들어갈 수 있는 룬이 열리기 때문에 사장과 기술이사를 뺀 사람으로 하려면 저희가 1인으로 하는 것이 어떨까 싶고요.

비밀누설 금지나 공무원 의제 규정에는 저희는 동의하는 사항입니다.

○소위원장 정태호 다른 의견이요.

○박수영 위원 저도 내부이사는 한 사람만 들어가는 게 맞는 것이 자기 업무를 하는 사람이 들어가서 리스크관리위원을 한다는 것은 논리상 맞지 않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이게 또 내부 인사가 적어야 됩니다. 내부 인사가 더 들어가면 자기 사업이니까 다 오케이, 오케이 이렇게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한 명으로 줄이게 되면 외부 인사가 두 명

이상이기 때문에 이제 정상화되는 것이지 둘, 둘 들어가는 것은 원래부터 맞지 않는 부분이 있었다, 이런 말씀을 올리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차관님 얘기한 대로 한 사람 들어가고 외부 인사 두 명 이상 하는 리스크관리위원회 방식이 맞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소위원장 정태호 다른 의견 없으신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그렇게 해서 통과시키겠습니다.

다음이요, 8번.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167페이지, 결정사항 8번입니다.

임직원 평가 및 징계 등 규정 여부입니다.

정태호 의원안에서는 공사의 임직원 평가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공사는 사장을 포함한 임원·직원에 대해서 경영성과 등에 대하여 정기 또는 수시평가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요. 공사는 평가 결과 또는 직무와 관련해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공사 또는 기금에 재산상 손실 또는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경우 등에는 해당 임직원에게 대해서 징계, 보직변경, 직무정지 또는 해임 등의 필요한 조치를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임원에 대해서는 운영위의 심의를 거쳐 해당 임원의 임명권자가 해임이 가능하도록 평가 결과에 따라서 하도록 돼 있고요. 또한 공사는 성과가 우수하거나 공헌이 큰 임직원에게 대하여 보상 또는 포상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공사의 임직원에게 대한 평가·징계·보상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직접 규정함으로써 대규모 국가 재원이 투입되는 전략적투자 수행 과정에서 임직원의 책임성과 윤리성을 제도적으로 확보하려는 취지로 이해되고 법률에 규정해도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정태호 정부 의견이요.

○재정경제부제1차관 이형일 일단은 보통 다른 입법례에 이런 징계나 보상에 대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내부 규정으로도 할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 소위 위원님들 논의해 주시면 저희가 검토를 같이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정태호 소위원님들 논의해 주십시오.

○강승규 위원 정부 의견 따라 주지요.

○허영 위원 정부 의견을 따를 수도 있는데, 법률에 보면 포괄적 면책규정도 있잖아요, 끝에?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예, 있습니다.

○허영 위원 그러면 법률조항에 이런 평가나 징계규정도 동등 수준으로 두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제안을 드리는데요.

○박수영 위원 위원장님 법안이라 제가 말을 못 하겠어요.

○소위원장 정태호 제기하세요. 제 거라서 제가 얘기 못 하겠는데……

○재정경제부제1차관 이형일 내부 규정에 해도 좋습니다.

○소위원장 정태호 그래요? 그러면 내부 규정으로 하지요.

○재정경제부제1차관 이형일 괜찮으시겠습니까?

○소위원장 정태호 예.

○재정경제부제1차관 이형일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187페이지입니다.

제정안은 공사와 공사에 자산을 위탁하는 위탁기관 간에 체결하는 자산위탁의 계약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려는 것입니다.

세부 내용은 뒤에 결정사항을 말씀드리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89페이지, 결정사항 첫 번째입니다.

미국 투자 SPV에 대한 한미전략투자공사의 위탁자산 직접 출자를 제한할 필요성에 대해서 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정안은 공사에 위탁한 자산의 운용용도로 국내외 금융기관에의 예치, 미국 투자 SPV에 대한 출자·투자, 공사가 설치하는 기금의 재원으로 사용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제정안은 조문상 공사가 기금을 거치지 않고 위탁자산을 직접 미국 투자 SPV에 출자하는 것도 가능하고 기금을 거쳐 위탁자산을 미국 투자 SPV에 출자하도록 하는 것도 가능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 투자 SPV에 대한 출자 투자는 기금에서 하도록 법률에서 설계가 되어 있으므로 조문을 수정해서 출자경로를 공사에서는 직접 미국 투자 SPV에 출자하는 규정은 삭제하고 출자경로를 기금에서 SPV에 대해서 출자를 하는 경로 일원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정태호 정부 의견이요.

○재정경제부제1차관 이형일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정태호 동의.

다음이요.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다음은 193페이지입니다.

위탁계약서에 규정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제정안은 자산위탁 계약에 위탁기관이 공사의 위탁자산에 대한 운용용도 및 운용방식을 제한하는 내용을 포함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원칙을 규정하고 있고 그리고 이에 대한 예외사항도 규정하고 있는데 제정안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김병기 의원안 등은 첫 번째, 기금 관리주체가 공사와 체결하는 계약에는 위탁자산의 운용용도 및 운용방식을 제한하는 내용을 포함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고 다음 항에 한국은행 또한 공사와 체결하는 계약에는 위탁자산 규모, 범위, 원금 및 운용수익의 환입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도걸 의원안은 기금 관리주체와 1·2를 합쳐 가지고 한국은행이 위탁자산의 규모, 범위, 원금 및 운용수익의 환입에 관한 사항을 포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요.

정태호 의원안에서는 기금 관리주체가—지금까지 얘기한 기금 관리주체는 외평기금을 이야기한다고 보시면 됩니다—공사와 체결하는 계약에는 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위탁자산의 운용용도 및 운용방식을 제한하는 내용을 포함할 수 있고. 두 번째, 한국은행이 공사와 체결하는 계약에는 위탁자산의 규모, 범위, 원금 및 운용수익의 환입에 관한 사항

을 포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194페이지, 검토의견 말씀드리면 검토의견은 수정의견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수정의견에서는 공사가 자산의 위탁계약을 체결하는 대상은 사실상 외평기금하고 한국은행 둘뿐입니다. 외환보유고를 운용할 수 있는 외평기금과 한국은행뿐인데 공사가 위탁기관과 체결하는 자산위탁 계약이 위탁자산의 운용용도 및 운용방식을 제한하는 내용, 그다음에 원금과 운용수익 환입에 관한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고 규정할 필요가 있고, 194페이지 다른 안처럼 1항에 보시면 원칙적으로 운용용도 및 운용방식을 제한하는 내용을 포함하여서는 아니 한다라는 원칙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 원칙에 해당하는 기관들이 없기 때문에 다 예외에 해당하는 기관들입니다. 그러니까 외평기금하고 한은은 다 운용방식이나 용도를 제한할 수 있기 때문에 원칙을 규정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수정의견은 원칙을 규정하지 않고 위탁기관과 체결하는 자산위탁 계약에 이런 용도와 운용방식을 제한하는 내용으로 규정하는 것이 법조문상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정태호 정부 의견이요.

○재정경제부제1차관 이형일 지금 수석전문위원께서 여러 의원님 안을 잘 종합해서 정리했다고 생각합니다. 수용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정태호 전문위원님 의견 수용입니다.

다음이요.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196페이지입니다.

한국은행 위탁자산의 원금·약정수익 보장 및 한국은행 위탁자산 운용에 관한 제한 규정입니다.

주요 내용을 보시면 첫 번째는 공사가 한국은행으로부터 위탁받은 위탁자산에 대해서는 원금과 약정수익의 지급을 보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정태호 의원안에서는 추가적으로 한국은행이 공사에 위탁하는 자산의 운용은 한국은행의 통화정책, 외환시장 안정 및 금융시스템 안정 기능을 저해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첫 번째, 한은 위탁자산의 원금·약정수익 보장에 대해서는 원금과 약정수익 보장장치를 마련하면 한국은행이 공사에 자산을 위탁할 유인이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대미투자로 인한 손실 위험을 사실상 재정으로 이전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으므로 원금과 약정수익 지급 보장 여부는 다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한국은행은 현재 누적 적립액은 한 20조 정도에 달하고 있어 약정수익까지 보장하는 것은 정부재정에 상당한 부담을 줄 우려가 있으므로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고요.

197페이지, 두 번째 항목에 대해서는 정태호 의원안과 같이 한국은행이 공사에 위탁하는 자산의 운용이 한은의 통화정책 등을 저해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는 것은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정태호 정부 입장이요.

○재정경제부제1차관 이형일 먼저 한국은행이 위탁한 자산에 대해서 원금과 약정수익

을 보장하는 건, 저희들은 김병기 안처럼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저희가 외환보유고의 수익을 활용해서 이걸 하는 사항인데 이 부분에서는 저희가 약정을 하고 그 약정이 실제 대미투자를 통해서 잘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관련해서 한국은행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중요한 위탁의 요건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 자리에 한국은행 관계자를 불러는 놓았습니다. 혹시 필요하시면 위원님들이 의견을 들어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정태호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고……

○재정경제부제1차관 이형일 그리고 마지막 끝내기 전에 두 번째, 한국은행의 어떤 통화정책과 외환시장이나 금융시스템의 안정을 저해하지 아니하여야 된다는 정태호 의원님 안은 수용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정태호 예.

한국은행 나와 주시지요.

소속과 지위를 말씀해 주시고요.

○한국은행국제총괄팀장 김민규 한국은행 국제국 국제총괄팀장 김민규라고 합니다.

지금 법안에서 말씀하시는 부분, 한국은행 위탁자산의 원금·약정수익 보장 관련한 한국은행의 의견은 일단 한국은행이 외환보유액에서 위탁한 자금에서 손실이 발생하거나 리스크에 상응하는 수익을 보장받지 못하게 된다면 유사시에 대외지급 안전판인 외환보유액을 안정적 수준으로 관리하기가 좀 어렵고 대외신인도가 악화될 소지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국내에 투자하는 해외 투자자들은 한은의 외환보유액이 일정적으로,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점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것들을 믿고 투자하는 부분도 있는데요.

특히 최근 이란 사태에서도 보셨듯이 외환보유액을 손실 없이, 안정적 수익을 내면서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미투자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근본적으로는 재정활동이라는 점에서, 만약에 한국은행이 정부와 투자 리스크를 공유하게 된다면 이걸 정부의 손실 가능성을 발권력으로 대비하는 상황이 되다 보니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도 일종의 재정의 화폐화가 될 우려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나라, 주요국 중앙은행들의 경우에도 외환보유액 운용 목적 이외에 금번 위탁과 같이 외환보유액으로 인정되지 않는 비적격 외화자산으로서의 이런 운용은 사실 극히 이례적인 상황입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중앙은행들이 대외지급 안전판인 외환보유액의 안정적 관리를 최우선으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저희 한국은행이 불가피하게 외환보유액을 대미투자를 위한 위탁자산으로 운용하더라도 원금 보장과 일정 수준의 투자 수익 보장이 수반되어야 미래의 외환보유액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고 대외신인도도 유지할 수 있을 거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소위원장 정태호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강승규 위원 한국은행의 의견 그리고 정부의 수용 의사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정태호 다 동의하시나요?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 동의한 걸로 하겠습니다.

다음이요.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198페이지, 위탁자산 운용용도의 대통령령 위임 여부입니다.

위탁자산 운용용도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를 규정할지 여부에 대해서 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김병기 의원안 등은 위탁자산의 운용용도를 대통령령으로 추가할 수 있도록 위임하고 있습니다. 박수영 의원안은 대통령령 위임 규정이 없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위탁자산의 운용용도를 대통령령으로 추가할 수 있도록 위임 하면 유연성은 가질 수 있지만 대미투자를 위해 외평기금과 한국은행에서 공사에 외화자산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법의 취지이고 외환보유고 운용은 외환시장 안정화를 위해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대통령령 위임을 통해 위탁자산의 운용용도를 정부의 재량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부적절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정태호 정부 입장이요.

○재정경제부제1차관 이형일 저희는 이 규정을 만든 게 혹시나 필요한 예비적 규정으로 준비를 했었는데요. 저희가 좀 더 검토를 해 보면 사실상 위탁자산을 받은 다음에 약간의 일시적인 순간에는 기금에 예치할 수 있겠으나 굳이 이걸 다른 데로 운용할 만한 용도를 찾기는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바로 기금에 재원을 넣는 게 오히려 더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정태호 수용이요?

○재정경제부제1차관 이형일 예, 박수영 의원님 안을 수용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199페이지, 자산위탁 허용 및 운용수수료 지급 의무 규정의 필요성입니다.

정태호 의원안에서는 위탁기관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유 자산의 운용을 공사에 위탁할 수 있고 이 경우 위탁기관은 공사에 운용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 위에 보시면 김병기 의원안 2조 6호에서 자산위탁에 대해 정의를 내리고 있고 그 운용에 대한 대가로 공사에 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로 지급 의무를 규정하는 것은 특별한 문제가 없지만 그 실익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정태호 정부 의견이요.

○재정경제부제1차관 이형일 저희는 이 조항이 이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수용해도 되고 사실은 제외되어도 되는 그런 중립적인 입장입니다.

○소위원장 정태호 그러면 전문위원 의견을……

○재정경제부제1차관 이형일 예, 수용입니다.

○소위원장 정태호 수용?

○재정경제부제1차관 이형일 예, 전문위원께서는 실익이 없다고 지금 말씀 주셨고요.

○박수영 위원 두 번 규정하게 되는 거지요, 동일한 걸?

○재정경제부제1차관 이형일 예, 그래서 저희는 이 조항이 없어도 조항이 다른 데에 있기 때문에……

○강승규 위원 위원장님이 결단을 내려 주시지요.

○소위원장 정태호 그러니까 전문위원 의견으로 간다고요.

○허영 위원 2조 6호에도 있고 그러니까……

○소위원장 정태호 다음이요.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206페이지, 공사의 회계에 관한 사항입니다.

공사의 회계 처리에 관해서 공사의 회계연도, 회계 구분, 예결산 승인 절차, 이익금과 손실금의 처리 방법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208페이지입니다.

결정 사항 1번 공사의 예결산 승인 절차입니다.

김병기 의원안 등은 재경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고요. 안도결 의원안은 운영위 의결을 거쳐 재경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고 변경 시에도 동일한 절차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태호 의원안에서는 운영위의 심의·의결을 거쳐 재경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변경 시에도 동일한 절차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첫 번째로 제정안은 공사의 예결산 승인에 관한 사항을 운영위의 심의·의결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법체계상 공사의 예결산은 운영위의 심의·의결을 거치도록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았고요.

두 번째, 변경 시에도 승인 절차가 필요하므로 동일한 절차를 명시할 필요가 있고 조문상 운영위 심의·의결을 규정하고 있는 정태호 의원안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정태호 정부 의견 주십시오.

○재정경제부제1차관 이형일 수석전문위원 말씀처럼 정태호 의원님 안을 수용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정태호 위원님들이요.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다음이요.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209페이지입니다.

결정 사항 두 번째, 공사 예산서 및 결산서의 제출입니다.

안도결 의원안 36조는 예결산서의 제출 규정을 시기와 더불어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재경부장관에 대해서는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까지 공사가 재경부장관에게 예산안을 제출해야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내에 운영위 의결

을 거쳐 재경부장관에게 결산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사는 재경부장관의 제출 승인 후 예산서·결산서를 국회 소관 상임위에 지체 없이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공사가 예산서 및 결산서를 국회 상임위에 지체 없이 보고하도록 하는 것은 공사의 예결산에 대한 국회의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려는 취지로 보입니다.

안도걸 의원안과 같이 보고 의무를 규정하는 동시에 보고 시기를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공사의 예결산에 대한 국회 통제를 강화하고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정태호 정부 입장이요.

○재정경제부제1차관 이형일 안도걸 의원님안처럼 공사가 예산·결산서를 국회 상임위원회에 지체 없이 보고하는 것은 저희는 수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까지 재경부장관에게 예산안을 내도록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은법에 보면 수은은 예산서를 사업연도 시작 1개월 전에 재경부장관에게 제출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석 달 전에 제출하면 오히려 업무에 있어서 너무 다급하게 하는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90일을 1개월 전으로만 수용해 주시면 나머지는 다 수용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정태호 위원님들 의견이요.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허영 위원 그럴 필요가 있습니다.

○소위원장 정태호 그러면 새 사업연도 시작 1개월 전에 재경부장관에게, 됐나요?

○재정경제부제1차관 이형일 예.

○소위원장 정태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이요.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210페이지, 공사 경영 관련 자료의 공고입니다.

제정안은 재무제표와 같은 공사 경영 및 자산 운용 실적 등 회계 관련 자료를 공고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공사의 투명한 운영과 책임경영을 위해서 공사의 경영 및 자산 운용 실적 등에 대해서 공고하도록 보칙에 새로 규정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투자공사의 경우에도 투자공사법에 따라서 재무제표 및 회계 기준, 회계감사보고서 등을 공고하도록 법률에 규정하고 있으며 위탁자산의 총자산 운용규모, 총자산에 대한 운용수익률 등을 공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유사하게 한미투자공사도 경영 관련 자료의 공고 규정은 법률에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정태호 정부 의견이요.

○재정경제부제1차관 이형일 수석전문위원 의견처럼 저희도 재무제표나 회계감사보고

서 등을 공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수용하겠습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소위원장 정태호 다음이요.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211페이지입니다.

공사의 이익금과 손실금 처리 방법을 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익금에 대해서 정태호 의원안은 자산의 감가상각에 충당한 후의 결산이익금을 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적립·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이익금에 대해 진성준 의원안은 이익금이 생기면 모두 적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손실금에 대해서는 김병기 의원안 등은 결산순손실금을 회계연도마다 적립금으로 보전하도록 규정하고 진성준 의원안은 결산 시 손실금이 생기면 적립금으로 보전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손실금뿐만 아니라 이익금 처리에 대해서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익금에 대해서는 진성준 의원안처럼 이익금이 생기면 모두 적립하는 안이 있지만 모두 적립하는 안보다는 이익금 적립 비율을 자본금의 총액에 이를 때까지 이익금의 50% 이상을 적립하고 잔여 이익금은 정부에 배당할 수 있도록 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 처리하도록 규정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참고로 공사 이익금은 전략적 투자에 따른 기금의 이익금이 아니라 공사 운영에서 발생하는 위탁수수료 등 수익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정태호 정부 의견 주세요.

○재정경제부제1차관 이형일 저희는 적립 외에 처리까지 넣어 주신 정태호 의원님 안에 대해서 수용합니다.

○소위원장 정태호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음이요.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넣는다는 거예요?

○재정경제부제1차관 이형일 정태호 의원님 안을 수용한다는 뜻입니다.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그러면 이익금 처리 방법에 대해서 대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해서 한다는 이야기고요, 정부 의견은.

그런데 212페이지의 투자공사법이나 수출입은행법 등을 보시면 이익금의 처리 방법이 나오거든요. 그래 가지고 투자공사법 34조의2제2호를 보시면 자본금의 2분의 1에 달할 때까지 10분의 1 이상을 적립하고 나머지는 국고에 납입한다든가 그런 부분을 수출입은행이나 산은은 다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지금 정부 의견은 대령으로 위임해 달라는 부분이고 수석전문위원실 의견은 다른 입법례와 같이 이익금 처리 방법을 법에서 규정하자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결정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재정경제부제1차관 이형일 저희는 일단 대령에서, 정부에 어떤 여지를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그런데 다른 입법례들이 지금 법에서 이익금 처리 방법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률에서 규정하는 것이 다른 입법례를 볼 때 타당한 걸로 보입니다.

○박수영 위원 수석전문위원 의견이 타당한 것 같은데요.

○소위원장 정태호 그러니까 지금 정부는 대통령령으로 해서 여유를 좀 달라는 거고 전문위원은 법에다 규정을 하자라는 거잖아요.

위원님들 의견이 어떠신가요?

○재정경제부제1차관 이형일 일단 대통령령으로 해 주시면 좋겠는데 정해 주시면 따르겠습니다.

○강승규 위원 이런 건 엄격하게……

○소위원장 정태호 그러면 법률에, 수석전문위원의 의견으로 갑시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재정경제부제1차관 이형일 수용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정태호 다음이요.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216페이지, 분쟁조정에 대한 사항입니다.

정태호 의원안에서는 분쟁이 발생할 경우 당사자는 분쟁의 신속하고 원만한 해결을 위하여 협의 및 분쟁 조정을 우선적으로 추진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분쟁조정 관련 규정을 두는 것은 분쟁의 조기 해결을 유도함으로써 불필요한 소송비용을 절감하고 외교·통상적 리스크를 관리하려는 것입니다.

맨 하단부에 보시면 본 조항은 소송 전 분쟁조정을 강행적 절차로 규정하기보다는 분쟁의 원만한 해결을 유도하기 위한 원칙적·권고적 규정이라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참고로 217페이지에 보시면 정태호 의원안 원문을 참조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정태호 그러니까 정태호 안으로 하자라는 거예요?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권고적 규정이기 때문에 법에 규정해도 별다른 문제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소위원장 정태호 정부 입장이요.

○산업통상부차관 문신학 법에 규정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다만 MOU와 특별법 간의 정합성을 좀 고려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위원님들 죄송합니다마는 3페이지 한번 봐 주시면 자금조달 및 현금흐름 구조도라고 해 가지고 지금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이 3페이지를 좀 설명드리려고 하는 이유가 정태호 의원님 안에 ‘이 법에 따라 체결되는 투자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당사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실제 이 분쟁이 있을 경우에 이루어지는 절차는 실무자로 보면 공사와 투자 SPV가 됩니다. 그리고 투자 SPV가 그 밑에 있는 프로젝트 SPV A, B, C 등을 총괄하기 때문에 실제 분쟁에 대한 조정은 실무적으로는 우리 공사와 투자 SPV가 되는 거고요. 이것을 그냥 둘이 하는 게 아니라 그 위의 산업부장관과 러트닉 상무부장관으로 되어 있는 한미

협의위에서 하고 그 속에 공사와 투자 SPV가 들어간다는 구조를 제가 말씀드리고, 일반 상거래 계약처럼 프로젝트 A에 있는 우리 기업 누가 바로 계약을 하고 하는 주체가 아니라는 말씀을 제가 우선 드리면서……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는 정부 쪽 안은 217페이지에 34조(분쟁조정) 2항이 그런 의미에서 규정되기가 좀 어려운 측면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항은 없애되 1항 중에서 ‘체결되는 투자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당사자’라는 말 대신에 ‘정부는 분쟁의 신속하고 원만한 해결을 위하여 한미 협의위원회 등을 통해 협의 및 분쟁 조정을 우선적으로 추진한다’ 이렇게 조항을 고치면 MOU하고의 정합성도 되면서 분쟁조정에 최선의 노력을 해야 된다고 하는,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법적 권고사항도 되면서 내용들과 합치가 될 것 같아서 정부는 그 안으로 제안을 드립니다.

○소위원장 정태호 다시 한번 읽어 주래요?

○산업통상부차관 문신학 ‘이 법에 따라 체결되는 투자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당사자’가 아니라 ‘정부는 분쟁의 신속하고 원만한 해결을 위하여 한미 협의위원회 등을 통해 협의 및 분쟁 조정을 우선적으로 추진한다’.

○박수영 위원 2항은 없애자?

○허영 위원 예, 2항은 없애고.

○산업통상부차관 문신학 예, 2항은 없애고.

○허영 위원 적절할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정태호 전문위원님 의견은 어떠세요?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2항을 없애는 이유가……

○산업통상부차관 문신학 2항에 MOU하고의 충돌 문제가 저쪽에서 제기될 가능성도 있고 그래서 ‘한미 협의위 등’을 우선은 넣어 놓고 아까 제가 설명드린 구조 분쟁이 났을 때, 실제로는 그렇게 분쟁조정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2항을 넣는 경우에 MOU에서 상정하고 있는 분쟁조정 그 부분하고 미국 쪽하고 컨플릭트(conflict)가……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명확하지 않은데요. 일단은 저희가 검토를 해 보고요. 어차피 어저께 조문 정리했던 것들이 있으니까요 그때 다시 검토를 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수영 위원 다시 한번 해 주시지요.

○소위원장 정태호 그러면 좀 정리를 해 가지고 나중에 다시 보고해 주시지요.

○박수영 위원 2항은 일반적인 원칙 같은데 빠자고 그러니까 좀 이상한데, 한번 더 검토를 하세요.

○허영 위원 2항으로 가면 그냥 ISDS 이 제도에 의존하는 경우로 가는 경우가 있어요.

○소위원장 정태호 조문 정리해 가지고 보고해 주세요.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나중에 한꺼번에 같이 보고드리겠습니다.

218페이지입니다.

업무 위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 부분은 재정부에 기금 설치를 전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결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생략해도 될 것 같습니다.

다음 222페이지, 보칙입니다.

첫 번째, 자료 비공개 및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정안은 자료 비공개, 비밀 누설 금지, 감독, 면책, 벌칙 적용 등에서의 공무원 의제 조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자료 공개·비공개에 대해서 김병기 의원안 등은 자료가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국민경제의 발전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거나 영업비밀 등 기업의 경영활동을 보호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공개하지 않도록 강행규정으로 비공개에 대해서만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공개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있고요.

그다음에 안도걸 의원안은 같은 취지인데,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강행규정이 아니라 재량 조항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김건·박수영 의원안은 공사 및 한미 협의회 업무 관련 자료가 국가안전보장 또는 기업 경영활동 보호가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항목, 자료 제출·열람에 대해서 진성준 의원안 등은 국회가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비공개를 전제로 자료 제출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에 대해서는 제정안은 공사 임직원, 운영위원회·사업관리위원회 위원에 대하여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보도록 하고 있고 반면에 정태호 의원안은 그 대상에 있어서 분야별 전문위원회·소위원회 위원도 공무원 의제 대상에 추가적으로 포함하되 벌칙 적용 조항은 형법 129조부터 132조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면책 조항은 제정안은 중앙행정기관 공무원 등이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에 대해서 고의·중과실이 없는 경우 징계 또는 문책 등의 책임을 묻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박수영 의원안의 경우는 책임을 묻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재량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정태호 의원안은 업무를 적극적·능동적으로 처리한 결과에 따라서 고의·중과실이 없는 경우 징계 요구 또는 문책 요구 등 책임을 묻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24페이지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자료 공개·비공개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제정안들이 비공개 원칙만 규정하고 있는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취지를 고려하고 대미투자 투명성 제고를 위해서는 우선 자료의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국가안전보장과 기업의 경영활동을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비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이 체계상 바람직한 것으로 보이고요.

두 번째, 자료 제출·열람에 대해서 첫 번째 비공개 자료의 경우 비공개를 전제로 국회 소관 상임위 의결을 통해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두 번째 한국투자공사법과 같이 상임위 의결로 비공개 사항에 대해서는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대미투자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고 투명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225페이지, 세 번째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부분은 정태호 의원안과 같이 분야별 전문위원회 및 소위원회 또한 공공성 높은 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공무원 의제 대상에 추가적으로 포함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고요.

공무원 의제 적용 대상 벌칙 범위 관련해서는 정태호 의원안은 형법 129조부터 132조까지 규정하고 있는데 그 밖의 제정안들은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률 유보의 원칙을 고려하여 볼 때 벌칙 적용 범위에 대해서는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으로 이렇게 하는 것보다 법률에서 정태호 의원안처럼 형법 129조부터 132조까지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았습니다.

네 번째, 면책 조항에 대해서는 관계 임직원의 능동적 업무 환경을 조성할 측면에서 필요하다고 보았고요.

한편 박수영 의원안처럼 면책 적용을 재량사항으로 규정할 경우에 사업수행 인력에 대해서 체계적인 보호와 적극적인 의사결정을 유도하기 위한 취지로 면책규정을 두는 것인데 이와 같이 재량사항으로 둘 경우에는 법에서 요구하는 대로 적극적인 행정이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정태호 정부 입장이요.

○재정경제부제1차관 이형일 먼저 첫 번째로 공개와 비공개와 관련해서 어느 걸 더 원칙으로 할 거냐 관련된 내용입니다.

저희는 일단 이번에 전략적 투자와 관련된 내용은 기업 경영활동을 하는 데 굉장히 민감한 정보가 있을 수 있고 또 대체로 국가안보나 또는 미국 쪽에서 보안을 전제로 많은 자료를 주고 있기 때문에 쉽게 공개하기 굉장히 어려운 사항입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비공개를 하되 다만 정태호 의원님 안처럼 국회가 법률에 따라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비공개로 제출하는 방안에 대해서 저희는 그 대안을 같이 섞고자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제시하는 부분은 기본적으로 비공개 원칙으로 하되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가 의결을 하면 그때는 비공개를 전제로 열람하거나 보고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보고를 받은 사람은 공개나 누설을 하지 않는다는 금지 조항을 넣어 주시면 이 부분은 저희가 좀 탄력적으로 일을 하면서 국회의 어떤 자료제출에 대한 권한도 같이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벌칙 적용에 대한 공무원 의제에 대해서는 수석전문위원님 의견에 동의하는 사항입니다. 정태호 의원님 안을 수용할 생각이구요.

면책과 관련해서도 수석전문위원님 말씀처럼 이게 재량이 아니고 의무적으로 넣어야만 실질적으로 사업수행 인력에 대한 적극적 의사결정을 유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정태호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강승규 위원 저는 이것 자칫하면 지금 정부 의견대로 할 경우 깜깜이 투자가 될 우려가 굉장히 큰데, 지금도 그것에 대해서 많이 우려를 하고 있는데 원칙을 비공개 원칙으로 해 놓고 그것도 굉장히 제한적으로, 국회의 의결로 열람 또는 보고토록 하는 것을 제한적으로 하면 거의 이견 없음으로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수석전문위원 의견대로, 기본적으로 어떤 투자사업이든 국회에 공개하지 않으면 자칫 굉장히 위험해집니다. 그래서 저는 수석전문위원 의견대로 가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박수영 위원 정부가 염려하는 게 국가안전보장하고 기업 경영활동 이 두 가지 아니겠습니까?

○재정경제부제1차관 이형일 그리고 미국에서 요청하는 보안 유지가 있습니다.

○박수영 위원 그게 국가안전보장하고 관련되는 거잖아, 보안 유지라는 게? 그렇지요?

○재정경제부제1차관 이형일 그렇습니다.

○**박수영 위원** 그렇다면 공개하되 이 두 가지 경우는 공개하지 않는다고 하는, 적극적으로 공개를 원칙으로 하는 것이 저는 맞다. 어차피 보호하고 싶은 두 가지는 단서 조항에서 빼 주는 거잖아요.

그다음에 미증유의 투자, 500조 원이라고 하는 엄청난 투자를 하는데 이걸 비공개를 원칙으로 했다고 그러면 우리가 엄청난 비난에 직면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국가안보, 좋지요. 기업 경영활동, 좋지요. 그렇게 공개 원칙으로 하는 게 맞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정태호** 다른 위원님들……

허영 위원님.

○**허영 위원** 이 부분에 있어서는 국회가 양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국회에 그동안 정부의 비공개 자료는 그 비공개성을 충분히 국회도 했고, 여기 국가안보사항이나 기업의 경영활동 또 국가안보사항이라는 것은 대미 관계에 있어서 미국 측에 요구한 사항도 포함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데 공사 내지 대미투자 관계에서 생산되는 모든 것이 다 비공개 자료는 아니지 않습니까? 오히려 비공개 자료보다 공개되어야 될 자료가 더 많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비공개 자료는 하여튼 철저하게 비공개 원칙으로 또 주된 원칙은 공개를 원칙으로 해서 국회가 통제할 수 있게끔 정부가 동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소위원장 정태호** 또 다른 위원님.

○**박지혜 위원** 실질적으로 그동안 국회가 활동하면서도 국가안보나 기업 경영활동, 영업상 비밀과 관련한 부분에 있어서는 비공개를 수용하는 입장으로 국회를 운영해 왔다고 생각하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도 다른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처럼 대규모 투자가 이루어지는 만큼 다른 일상적인 국회의 견제 기능이 잘 작동될 수 있도록 공개를 원칙으로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차규근 위원** 저도 같은 의견인데 공개를 원칙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고요.

혹시 정부에서 우려되는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국가 안전보장 및 기업 경영활동 외에 다른 표현, 국익이라든지 그런 문구는 추가로 비공개 사유로 넣는 것은 고려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소위원장 정태호** 정부의 입장 말씀해 주십시오.

○**재정경제부제1차관 이형일** 그러면 저희가 위원님 말씀을 좀 고민해 가지고 문구를 한번 다듬어 볼 수 있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소위원장 정태호** 예, 조문 정리해서 오시지요.

나머지 자료 제출·열람 이것도 똑같은가요?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2번 사항에 대해서 분명하게 정하고 넘어가야 되는데요.

1번 사항에서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국가 안전보장이나 경영활동 보호에 대해서는 비공개한다고 규정을 하고, 비공개 사항에서……

224페이지 하단에 2번입니다.

첫 번째 항목, 비공개 자료의 경우에는 상임위원회 의결을 통해서 열람하는 방안이랑 두 번째는 열람을 한 후에 비공개 사항이 아닐 경우에는 한국투자공사법 사례와 같이 정부가 비공개로 지정은 했지만 이것을 공개할 자료라고 봐서 국회에서 상임위 의결로 비공개 사항에 대해서 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 1번·2번 중 결정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강승규 위원 그렇게 해야지요. 그것까지 포함해서 문구를 만들어 주세요.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소위원장 정태호 저도 대체로 위원님 생각하고 비슷한데, 제일 중요한 게 하여튼 원칙이라는 게 있는 거잖아요. 그 원칙은 공개가 원칙이지요. 그러나 국가안보라든가 기업경영과 관련된 부분은 비공개로 할 수가 있는데, 그래도 원칙을 비공개로 한다 이것은 국민들이 납득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그러면 1번·2번 묶어 가지고 자료 공개·비공개, 자료 제출·열람 이렇게……

○소위원장 정태호 그래서 정부 측에 말씀드리는 것은 그 방향에서 문구를 협의해서 정리해 주시라는 거예요.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그런데 아까 차규근 위원님 말씀처럼 국익이라는 말은 너무 불명확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조문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정태호 그러니까 조율하셔서 정리를 해 주세요.

이것은 조문 정리해 가지고 다시 논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박상웅 위원 궁금해서 그러는데 이 소관 상임위는 기재위하고 산자위 다 포함합니까?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소관 상임위는, 사업관리위원회는 산자위로 보시면 되고요. 운영위는 재경부……

○박상웅 위원 절차상으로 나눈 거고 이 중간에 중요한 부분은…… 이게 운영위에서 공개 여부를 결정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기재위에 비공개 열람을 하도록 하고 이런 것은 아닐 것 아니에요?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그런 것은 아닙니다. 산자위 소관 사항에 대해……

○박상웅 위원 그러면 산자위하고 기재위, 적어도 두 개 위원회에서 요청하면……

○소위원장 정태호 그러니까 그것조차도 좀 논의를 해 봐야 되는데 이 법의 소관 상임위는 재경위거든요. 그다음에 개별 사업별로 가면 산자위가 될 수도 있는데……

○차규근 위원 정무위도 관련……

○소위원장 정태호 그렇지요.

그런데 개별 사업으로 가 버리면 여러 위원회가 다 걸쳐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 이것은 소관 상임위라고 정리를 해 주는 게 맞을 거예요, 이 법의 위원회. 그러니까 이 법의 소관 위원회가 되는 거지요. 그렇게 해야지, 안 그러면 여기저기서 다 들고나오면 정부가 감당 못 할 걸요.

○차규근 위원 그런데 이 법의 소관 위원회는 재경위……

○소위원장 정태호 예, 재경위.

○차규근 위원 그러면 재경위 하나만……

○박수영 위원 산업위가 더 많을 것 같은데……

그것도 의논해 보세요.

○소위원장 정태호 그러니까 하여튼 그것을 의논해서 정리해 오십시오.

○강승규 위원 그러면 우리 산자위에서는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재경위에서 논의된 것……

○박상웅 위원 귀동냥하는 거예요? 그것은 안 되지.

○재정경제부제1차관 이형일 정부 입장은 재경위랑 산중위가 다 역할을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수영 위원 정무위가 또 빠지신다니까.

○허영 위원 아니, 저희 정무위는 그런데 두 소관 상임위로 규정하면 될 것 같아요.

○강승규 위원 산자위는 들어가야지.

○박상웅 위원 어차피 통상 문제니까, 통상 문제인데 산자위를 빼면 되는가.

○소위원장 정태호 하여튼 그것 상의를 해 가지고 결론 내려서 오십시오.

다음요.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238페이지입니다.

국회 보고 및 동의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정안은 국회 통제권을 강화하기 위하여 정기보고, 사전보고, 사전동의 등 다양한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정기보고에 대해서 각 제정안은 대미투자 업무 또는 기금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국회 또는 상임위에 정기적으로 보고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사전보고 및 사전동의에 대해서는, 대미투자 전 사전보고는 홍기원·안도걸 의원안이고요. 진성준 의원안 등이 사전동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중대한 사유 발생 시 국회 보고입니다.

홍기원 의원안은 국제·통상 환경에 중대한 변경이 발생한 경우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운영위로 하여금 투자 집행계획을 재작성하여 국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며, 정태호 의원안은 기금 운용 구조의 중대한 변경, 대규모 손실 발생 등 대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국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41페이지입니다.

대미투자가 국가 경제와 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국회 통제장치는 필수적으로 보이고요.

개별 항목별로 검토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정기보고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보고 사항이나 보고 주체가 좀 다른 측면이 있는데 검토의견은 보고 주체를 일단은 정부로 통일하고요. 매년 연차보고서를 국회에 공식 서류로 작성·제출하도록 법률에 규정하고요. 그다음에 연차보고서에 포함될 사항을 법률에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한미전략투자기금의 관리·운용보고서, 두 번째 해외투자 영향평가서인데 그 영향평가에 대해서는 저희가 뒤의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을 따 와 가

지고 국내 경제·재정, 관련 산업, 고용 그다음에 외환시장은 통상조약법에는 없지만 외환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외환시장을 예시로 넣어 봤습니다. 그래서 외환시장 등에 미치는 영향을 포함한다라고 규정하는 의견을 제시했구요.

세 번째 대미투자 협의 결과보고서, 네 번째 연도별 대미투자 및 조선험력투자의 집행 계획 및 전년도 집행 결과보고서, 다섯 번째 전략적 투자 성과보고서 등으로 그 다섯 가지 사항에 대해서 어떤 것을 집어넣고 어떤 것을 뺄지에 대해서는 소위에서 결정해 줄 사항으로 보았구요.

두 번째, 사전보고 및 사전동의에 대해서는 대미투자에 대한 국회의 사전동의는 행정 부의 독자 판단에 따른 의사결정 리스크를 완화하고 전략적 투자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한다는 측면이 있으나 MOU에 따른 투자 일정 이행에 차질을 초래하여 혹시라도 통 상 마찰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투자 집행 이전에 국회에 투자 방향과 주요 내용을 사전에 보고하는 경우에는 국 회의 민주적 통제를 강화할 수 있고 홍기원 의원안 및 안도걸 의원안과 같이 투자 규모 또는 중요도에 따라서 국회 보고 대상을 한정하는 경우에는 행정부담 완화가 가능하다고 보았고, 제정안에는 없지만 사전보고 시점을 어느 시점으로 해야 될지를 소위에서 결정 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우선은 개별 전략적 투자에 대해서 사업관리위원회 심의 후 운영위 심의·의결 전에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 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세 번째, 중대한 사유 발생 시 국회 보고에 대해서는 홍기원·정태호 의원안과 같이 중 대한 환경 변화는 향후 국민경제와 국가재정에 영향을 크게 미칠 수 있는 사안인 만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가 필요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만 홍기원 의원안은 중대한 사항이 발생할 경우 운영위원회로 하여금 투자 집행계획 을 재작성해서 국회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투자 집행계획은 당초 국회 승인 대상이 아니었으나 재작성하는 경우에 승인을 받도록 하는 경우에는 대응의 적시성이라 든가 MOU와의 상충 우려 등이 있으므로 이를 고려해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 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정태호 정부 의견요.

○재정경제부제1차관 이형일 우선 정기보고와 관련해서는 보고의 주체를 정부로 하는 것은, 이 보고서는 공사가 투자집행기구라서 지금 각종 현황 보고서를 내는 거라서 공사 가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은 들고요. 실제 회의를 열 때는 당연히 정부를 부를 수 있지만 보고서 자체는 공사가 제출하는 게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보고서 내용 안에 들어갈 자료에 대해 봤을 때는 1·4·5는 저희가 내는 게 가능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2의 경우에는 4나 5에서 이 내용을 최대한 포함해서 하는 것 이 필요하지 이것을 직접적으로 쓰기에는 저희가 좀 부담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3 의 경우에는 저희가 제출하기 굉장히 어려운 보고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의견을 드 리겠습니다.

그리고 사전보고나 사전동의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저희는 사전보고는 가능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고 시점은 운영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친 뒤 미국으로 가기 전에 그때 저희가 사전보고를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대한 사유 발생 시 보고는 수석전문위원님 말씀처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하는 것이 저희들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정태호 홍기원 의원안은 ‘바꾸면 승인을 받아라’ 이렇게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정경제부제1차관 이형일 그것은 수석전문위원님 말씀대로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박상웅 위원 제가 한 가지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단순한 이야기인데 지금 운영위원회에서 어떤 결정을 하기 전에 국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지요?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아니, 보고 시점은 제정안에 없으니까 보고 시점을 정하셔야 됩니다.

○박상웅 위원 그러니까 운영위원회에서 어떤 의결을 하기 전에 국회에다가 의논해서 오케이 되면 운영위원회의 결정을 공사가 집행하도록 바로 명령이 내려가는 그런 구조……

그런데 예를 들어서 기금을 위탁하거나 할 때 정부가 주도를 하지 않습니까, 공사에 기금을 줄 때? 그러면 기금을 받아 가지고 예를 들어서 향후 계획이라든지 어떤 계획을 세워서 공사가 국회에 보고를 한다, 그러면 자금이 어떻게 어떻게 조달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이런 신규 프로젝트를 지금 이렇게 하려고 한다 하는 것을 공사가 보고하도록 이렇게는 할 수 있는데 정부가 이러이러한 방법으로 기금을 이렇게 조달해서 공사에 돈을 이렇게 위탁하겠다는 하는 것에 대해서는 사전에 정부가 그 기본 베이스를 국회에 보고하는 절차는 필요 없습니까?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일단은 지금 시스템 자체가 사업관리위원회에서 타당성조사를 해 가지고 타당성이 있다라고 보는 것을 운영위원회에 보고를 하고, 운영위에서 심의·의결을 해 가지고 그 결정되는 사항을 산업부장관이 한미투자협의회에서 협의를 해 가지고 미국과 최종 결정이 되는 구조인데요. 나중에 공사가 집행을 하는 것은 사실 그 결정이다 나온 이후기 때문에, 의사결정 과정 중에 보고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실무적 단계로 보이고요.

그래서 지금 보고 시점은 사업관리위원회가 상업적 합리성이 있다고 결정한 사항을 운영위원회의 최종 결정 전에 보고를 받을 것인지 아니면 운영위원회가 최종 결정을 해서 미국과 협의하기 전에 받을 것인지 그 두 가지 가지고 결정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시점에 대해서만.

○박상웅 위원 그러니까 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면 그게 공사로서는 최종 의사결정으로 보는데……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아니,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 것을 한미 협의회에서 미국과 협의해야지 최종 의사결정이 되는 겁니다.

○박상웅 위원 그 전에, 그 전에 정부에 가기 전에.

○산업통상부차관 문신학 지금 트랙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운영위원회 결정이라고 하는 것의 의미는 지금 말씀해 주신 게 기금을, 돈을 진짜 보낼 거냐라고 하는, 최종적인

돈 보내는 것에 대한 운영위 결정이 하나 있는 거고 그 전에 사업관리위원회에서 상업적 합리성에 대한 판단을 해 가지고 운영위원회에다가 올려서 운영위원회에서 ‘그래, 상업적 합리성이 있다고 봐’라고 해 줘야 산업부장관이 미국하고 협의에 들어갑니다. 그 전에 사전보고를 드리겠다라고 하는, 기금 그 부분이 아니라 미국하고 협의 들어가기 전에 그 보고를 드리겠다 그 말씀입니다.

○박상웅 위원 그것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문제는 공사가 지금 법정자본금은 3조로 한다 하더라도 기금을 받아야 준비가 되잖아요. 그런데 정부에서 재경부 주관으로 해 가지고 한국은행을 통하든 어디를 통하든 이 돈을 얼마를 조달해서 공사에 위탁을 한다 그 과정에 정부가 그런 결정을 했으면…… 우리가 국가 예산을 수립할 때도 국회 보고가 있듯이 그 부분도 우리가 공사에 이러한 목적으로 임하는 규모의 돈을 이렇게 이 기간 내에 하겠다, 돈을 넣는다 하는 그것은 국회 승인이 필요하지 않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해서 돈을 마련하는지 우리는 몰라. 단지 공사가 한미 협의위를 통해서 이렇게 이렇게 하기로 했으니까 알고 계시라고 국회에 사전 보고하는 그 내용만 들으면 그게 전부 국회의 역할인가요?

○재정경제부제1차관 이형일 저희는 기본적으로 사업이 잘되느냐 안 되느냐 이게 제일 중요한 의사결정이고요. 기본적으로 한 해에 200억 불, 총 2000억 불, 이 자금 재원은 외환보유고 위탁자산을 받는다고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 사업 내용을 컨펌해 주시면, 돈을 얼마 받고 하는 것은 사실 집행적인 업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박상웅 위원 지금 국민들도 우려하는 게 그 재원을 어떻게 조달하나 그런 걱정도 있거든. 그러니까……

○박지혜 위원 재원은 200억을 상한으로 해서 외평기금 운용수익으로 하겠다……

○박상웅 위원 그렇게 하는데 매달……

○박지혜 위원 그리고 각종 재원들, 어떤 재원을 쓸 건지는 지금 저희가 법에 규정을 했잖아요.

○박상웅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을……

○박지혜 위원 돈이 실제로 나가는 것을 승인하는 게 필요하다 그런 말씀이신 건가요?

○박상웅 위원 예, 슬그머니 들어왔다가 집행되는 것만 우리가 나중에 보고받는 것보다 이렇게 해서 차질 없이 들어왔다는 것은 짧은 보고지만 국회에서 ‘오케이, 잘됐네. 차질 없이 됐네’, 이게 생각보다 다를 수도 있잖아요.

○소위원장 정태호 강승규 위원님.

○강승규 위원 또 원론적으로 돌아가는데요. 보고의 주체를 정부가 아니고 공사로 하자는 게 정부 의견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강력 반대입니다. 공사를 설립하는 그런 취지 등을 볼 때도 계속 정부가 공사 설립해 놓고 책임을 이곳에 넘기려는 듯한 인상을 처음부터 지울 수가 없고 저는 보고 주체를 공사로 한다는 것은 공사 설립의 여부까지도 좌우할 정도로 중요한 문제다, 그래서 반드시 보고 주체는 정부로 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두 번째, 지금 문제 제기하신 것처럼 대미투자 협의 결과보고서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인 투자의 여러 가지 내용 등을 보고로 그칠 거냐, 동의를 받을 거냐 이런 부분 등에 대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 명확히 선을 긋고 가지 않으면 이 부분도 실제 국회라는 것은 그

냥 패싱 기관이고 껌껌이 투자로 호를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지금 보고 내용 중에서도 3번 같은 경우는 정부가 절대 불가하다 이런 입장인데 이런 부분도 간사와 수석전문위원께서 이게 정말 어느 범위까지 가야 되는 건지 등 실제 사업도, 우리가 사업을 방해하려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국회에 사전 보고 또는 동의라는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국회가 이 부분을 통제하지 않으면 정부도 나중에…… 아까 공사에 책임을 미루는 것은 더욱더 안 되지만 국회와 일정 정도 역할 분담을 하면서 이 부분에서 미국과도 견제를 하는 부분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문구라든가 이런 것이 굉장히 면밀하게 설계가 돼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소위원장 정태호 차규근 위원님.

○차규근 위원 기금 관리와 운용 관련한 보고 주체를 공사로 하느냐 정부로 하느냐 거기에 대한 의견이 분분한 것 같은데요. 제가 헛갈리는 게 이미 기금이 운용되고 그것 관리하고 운용하는 것은 공사로 하는 것이 맞고 아까 박상웅 위원님 우려하신 그것은 기금을 조성할 때 얼마를 어디에서 조성하느냐 이 부분은 대미투자특별법 이것과 무관하게 재정위 업무보고 과정에서 다 체크되고 보고되고 하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우려하시는 부분은 굳이 이 법에 따른 보고와 무관하게 재정위에서 재정부장관 상대로 이렇게 질의하고 확인할 수 있는 게 아닌가 싶은데 그 부분도 한번 명확하게 정리를 했으면……

○강승규 위원 정부 입장 얘기해 보세요.

○소위원장 정태호 잠깐만.

허영 위원님.

○허영 위원 저도 의견을 좀 드려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보고의 주체는 정부로 하는 게 맞고요. 그다음에 연차보고서 작성은 공사가 할 수밖에 없겠지요. 그런데 연차보고서를 공사가 한다 이런 규정을 굳이 넣을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그것은 재경부나 산업부에서 업무 관계의 분장을 통해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정부가 당연히 해야지요, 왜냐하면 사업관리위원회나 운영위원회가 재경부에 있고 또 산업부에 있는데.

○소위원장 정태호 정부 입장이요.

○재정경제부제1차관 이형일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두 가지가 다른 겁니다. 개별 프로젝트에 대해서 보고할 때는 정부가 와서 직접 다 보고를 하고 다 오케이 받아서 집행하게 되는 거고요. 정기보고라는 것은 1년에 한 번 연차보고서를 내는 거고 이 연차보고서는 공사가 자기의 업무에 대해서 제출하는 겁니다. 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하는 주체는 공사입니다.

○허영 위원 적어도 공사가 연차보고서를 제출하면 정부가 그걸 다 습득하고 국회에 보고를 해야지요.

○소위원장 정태호 지금 이것은 뭐냐 하면 연차보고서의 내용에 이러이러한 것들을……

○허영 위원 그리고 내용도 1·4·5번은 기본으로 해야 되지만 해외투자 영향평가서는 자체적으로 아니더라도 이것에 대한 평가를 외주, 용역을 줘서라도 1년에 한 번씩은 만들어 가지고 보고를 해야지요. 영향평가를 안 하면 어떻게 제대로 된 투자 집행에 대한 관리를 할 수 있겠습니까.

대미투자 협의 결과보고서 이것은 아주 비공개 영역이 많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이것도 명시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강승규 위원 글썄, 하여튼 그런 문구는 조정을 하되 국회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통제나 이런 것을 할 수 있도록 해 줘야지. 정부도 그게 편할 겁니다. 나중에 어찌 됐든 국회 핑계 댈 수도 있어요.

○소위원장 정태호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투자라는 게 정부 대 정부 간의 합의사항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부와 정부의 합의사항으로 3500억 불이 투자가 되는 건데 그러면 당연히 그것에 대한 보고는 정부가 주체가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다만 그 안의 개별 사안들에 대한 보고 같은 경우 공사와 관련된 것은 공사가 작성하더라도 정부가 투자하기로 결정한 건데 보고의 주체를 개별 공사가 한다 이게 좀 안 맞는 것 같은데.

○재정경제부제1차관 이형일 저희가 한 번 더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소위원장 정태호 그러니까 그 부분 정리를 한번 해 보세요.

○박상웅 위원 위원장님 말씀이 맞아요. 돈이 얼마 들어오는 것, 어떻게 조달했다는 것도 뻔하지만 그것도 보고해야 돼.

○소위원장 정태호 그다음에 사전 보고냐 동의냐는 사전 보고로 정리가 되는 거고.

그다음 사전 보고의 시점은 미국과 협의 들어가기 전에 운영위원회 결정하고…… 그런데 그것 운영위원회 결정하고 나서 하는 게 맞지요. 왜냐하면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으로 보고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미국하고 협의 전에 보고하는 게 맞고요.

그다음에 중대한 사유가 발생해서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당연히 국회에 보고하는데 아까 정부안은 그냥 보고인 거지요, 동의는 아니고?

○재정경제부제1차관 이형일 예, 소관 상임위에 보고……

○소위원장 정태호 예, 일단 그렇게 정리를 하고 협의를 해 주세요.

지금 12시인데 딱 3개 남았어요. 회의록 작성, 벌칙, 부칙.

이것 마저 끝내는 게 낫겠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알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잠시만요. 그러면 정기보고, 연차보고서에서 일단 1·2·4·5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까?

○박상웅 위원 예, 대미투자 협의 결과보고서만 빼고.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예, 1·2·4·5고요.

그다음에 사전 보고는 운영위 끝나고 하는데 보고 주체는 정부로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정태호 예.

그다음에 회의록.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257페이지입니다.

회의록 작성·제출에 대해서 홍기원 의원 등은 운영위원회 등의 회의록 작성 의무와 함께 작성된 회의록의 국회 소관 상임위 제출 의무 규정을 두었고요. 두 번째, 박수영 의원은 국회 소관 상임위 위원의 공개·누설 금지 조항을 추가하였습니다.

258페이지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회의록 작성에 있어서 회의록 작성은 법정 의무사항이므로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비공개할 필요성이 있는 자료의 경우 정보공개법의 취지와 국회의 민주적 통제를 절충해서 비공개 사항에 대해서는 국회 소관 상임위 의결을 통해 비공개회의 방식으로 열람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고 보았고요.

두 번째, 공개·누설 금지에 대해서는 국가 안보, 기업 경영상 비밀과 연계될 경우 누설 금지 의무를 통해 보호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정태호 정부 입장요.

○재정경제부제1차관 이형일 기본적으로 회의록 작성은 당연히 저희들이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제출에 대해서 만약에 저희가 비공개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국회 소관 상임위의 의결이 있으면 비공개 방식으로, 비공개를 전제로 열람하는 것은 수용 가능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누설 금지는 저희들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정태호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의견이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다음, 261페이지 벌칙 및 과태료입니다.

첫 번째, 벌칙은 운영위 위원이거나 그 직에 있었던 사람 등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외부에 공개·누설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두 번째, 공사·운영위원회 등 업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자료 및 정보를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사용 또는 공개하는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요.

과태료의 경우에는 공사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거나 임원·직원이 직무 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정태호 의원안은 직무 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과태료 규정이 없습니다.

262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벌칙에 대해서는 다른 법률에도 채택되는 방법이고 다른 법률과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 적절한 수준으로 판단되므로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보이고요.

264페이지, 과태료 부분도 다른 입법례에 비취 볼 때 적절한 수준으로 판단되고 정태호 의원안이 직무 외의 영리 업무 종사에 대해서는 제외하고 있지만 이를 포함하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정태호 정부 입장이요.

○재정경제부제1차관 이형일 수석전문위원 의견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정태호 다른 위원님.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입니다.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마지막, 부칙입니다.

부칙의 주요 내용은 시행일이 3개월 경과 후고요. 한미전략투자공사 설립위원회에 대해서 재경부장관이 설립위원을 위촉하여 설립위를 구성하고 설립 준비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에 대해서 정태호 의원안은 공포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설립위원을 7명 이내로 위촉해서 설립위원회를 구성하도록 구성기한과 위원 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사가 설립되는 비용은 공사가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고요.

경평에 대한 특례는 재경부장관은 공운법에도 불구하고 공사 설립 후 3년이 경과한 시점부터 외부 관계 전문기관에 공사에 대한 경영평가를 의뢰하도록 3년 유예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권리·의무 승계에 대해서는 정태호 의원안 부칙 4조에서 공사가 설립위의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법 시행 전 예비검토 승계에 대해서는 정태호 의원안 부칙 6조에서 이 법 시행 전 대미투자 예비검토와 관련하여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의결한 사안은 이 법에 따른 사업관리위원회 및 운영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친 것으로 간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267페이지입니다.

설립위원회 구성기한 및 위원 수 규정에 대해서는 구성기한을 공사 설립 등에 대한 법 시행 전 공사 설립을 위해서 설립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보았고요. 위원 수도 설립위가 지나치게 비대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7인으로 규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268페이지, 공사 경평에 대한 특례 규정 여부는 공사 설립 초기에는 투자 집행이 본격화되지 않아 경평이 형식화될 우려가 있다는 취지로 보이나 투자 성과와는 별도로 공사의 조직 운영, 의사결정 체계, 내부 통제 및 위험관리 등이 적절히 작동하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은 공운법에 따라서 초기 단계부터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새만금공사의 경우에도 별도의 경평 특례 규정은 없었습니다.

269페이지, 결정사항 세 번째 권리·의무 및 법 시행 전 예비검토의 승계에 대해서는 공사가 설립위원회의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도록 규정하는 것은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으로 법 시행 전 예비검토의 승계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대외경제장관회의 예비검토 결과가 사업관리위원회의 심의 및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것으로 간주할 경우 신속한 대미투자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다만 상업적 합리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법률에서 마련한 운영위 및 사업관리위원회의 심의·의결 절차를 거치지 않고 사업 추진 의사가 결정됨으로써 상업적 합리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사업 추진 여부가 결정될 우려가 있고 두 번째, 법률에서 대령인 대외경제장관회의규정을 인용하기보다는 관련 내용을 부대의견에 두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봐서 저희가 밑에 부대의견(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정태호 정부 의견이요.

○재정경제부제1차관 이형일 마지막 관련된 것 말씀을 드리고, 제가 앞선 논의에서 한 가지 놓친 게 있는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저희가 문안을 정리할 때 필요한 사항 제안

을 드리고 제시를 하고자 합니다.

○소위원장 정태호 예.

○재정경제부제1차관 이형일 먼저 첫 번째로 공사설립위원회 구성기간은 정태호 의원님 안 3개월 수용하겠습니다.

그리고 설립위원 인원 제한 정태호 의원님 안 7명 이내 수용하겠습니다.

그리고 공공기관운영법상 경영평가 유예는 수석전문위원 의견은 처음부터 유예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지만 저희들은 설립 초기 3년간은 업무에 좀 더 매진하기 위해서, 공공기관 운영에 따른 여러 가지 또 어떻게 하더라도 관련된 업무가 좀 따라갈 것 같은데 3년 정도는 유예해 주시는 것이 실무적으로는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위원님들이 그럴 필요 없다고 생각하시면 저희는 수용은 가능한데 업무의 부담을 덜어 주는 차원에서 한번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공사설립위원회 권리·의무 승계 정태호 의원님 안 수용 가능하고요.

법 시행 전 예비검토의 승계는 저희들은 기본적으로 같음해 주셨으면 좋겠지만 수석전문위원님 말씀처럼 법 통과 이후에 신속히 의결을 할 수 있도록 부대의견을 정해 주시는 것도 저희들 수용 가능합니다.

○소위원장 정태호 위원님들 의견이요.

○강승규 위원 공사의 경영평가에 대한 특례 그것 설립 초기 단계부터 필요하다는 전문위원 의견에 저는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정태호 다른 분이요.

○차규근 위원 저도 경영평가 이것은 국가 경제와 재정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사업이다 보니까 3년 동안 면제하는 것은 좀 아니지 않나. 다만 설립 초기부터 필요하긴 한 것 같은데 혹시라도 초기에 빨리 적용하고 이렇게 하는 데 행정적인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필요하다 그러면 6개월이나 1년 정도는 유예하는 정도……

○재정경제부제1차관 이형일 보통 1년 단위로 시행이 됩니다.

○차규근 위원 그 정도는 고려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3년 면제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그런데 올해 공사가 설립되면 올해는 당연히 경평을 안 받고 다음 연도에 받기 때문에 별도 유예기간을 둘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차규근 위원 올해 안 받으면 뭐……

○소위원장 정태호 그러니까 이렇게 되지요. 실제로 올해 한 6개월 일하고 내년도에 평가를 6개월 치를 받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할 거냐, 아니면 내후년도에 해 가지고 1년 6개월 치를 평가받을 거냐 그 선택을 하면 돼요. 그러니까 3년 가는 것은 너무 길고.

○강승규 위원 그래도 해야 될 것 같아요. 초기 단계에 평가를 받아야 제대로 출발하는 지를 보지요.

○재정경제부제1차관 이형일 예, 알겠습니다.

○차규근 위원 저도 초기부터 적용하는 것이……

○소위원장 정태호 저도 처음부터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러면 그 뒷부분, 권리·의무 승계는 동의하시고……

○재정경제부제1차관 이형일 예.

○소위원장 정태호 그다음에 법 시행 전 예비검토 부분인데 그것은 운영위원회하고 심의 의결을 거치는 절차 하면 된다는 거지요?

○재정경제부제1차관 이형일 예, '조속히 열겠다' 이렇게.

○소위원장 정태호 그것에 동의하는 거지요?

○재정경제부제1차관 이형일 예, 부대의견 주시면 동의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정태호 그러면 위원님들 동의하시는 거지요?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정경제부제1차관 이형일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릴 게 있어서……

사전 보고와 관련된 내용인데요. 일단 여기는 사전 보고가……

○소위원장 정태호 아까 사전 보고, 중대 상황 변경……

○차규근 위원 241페이지.

○재정경제부제1차관 이형일 사전 보고와 관련해서 할 때 앞부분에 저희가 어제 논의한 것 중에 관련된 사항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희가 어제 상업적 합리성을 논의할 때 원칙을 이렇게 정해 놓고 난 다음에 예외 규정에 대한 논의가 잠깐 있어서 저희한테 문안을 만들어 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논의할 때 사전 보고로 했는데 예외 규정과 관련해서 그러면 어떤 통제 절차를 할지에 대해서 논의를 한번 해 주셔야 저희가 정리할 때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것도 다 사전 보고를 할 건지 아니면 다른 절차를 하실 건지요.

○소위원장 정태호 아니, 그래서 내가 아까 물어본 거지요. 그러니까 예외적 상황에서 무슨 상황의 변화가 있어 가지고 변경을 해야 되거나 이럴 경우에는……

○재정경제부제1차관 이형일 이것은 이미 끝난 다음에 추후에 중대한 사유인 거고요. 저희는 상업적 합리성의 예외 규정, 처음에 논의할 때 상업적 합리성과 관련해서 저희가 원칙은 준수하지만 예외를 저희한테 만들어 보라고 주셨거든요. 그래서 문안을 만들었는데……

○박상웅 위원 국가안보나 기타 등 이런 부분들……

○재정경제부제1차관 이형일 예, 그럴 경우에도 사전 보고로……

○소위원장 정태호 그런데 저는 중대한 변경을 할 때에는 뭔가 국회 동의를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재정경제부제1차관 이형일 그것에 대한 논의를……

○박지혜 위원 그런데 예외의 경우에도 사업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친 다음에 운영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치게 되는 것 아닌가요?

○재정경제부제1차관 이형일 저희는 사전 보고보다 더……

○소위원장 정태호 그러니까 상업적 중대성을 판단하는 데서 예외적 상황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재정경제부제1차관 이형일 그렇습니다. 처음에……

○소위원장 정태호 상업적 합리성이라는 것은 이 투자에 있어서 가장 근간이 되는 건데 그것에서 예외를 둔다는 것은, 너무 재량을 주는 것은 아니라고 저는 보고.

○허영 위원 보고도 사전 보고로 해야 돼요.

○소위원장 정태호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는 국회의 동의를 필요하다고 저는 봐요.

어떠신가요?

○강승규 위원 그렇지요. 위원장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정태호 왜냐하면 기준이 바뀌는 건데 그 기준을 바꾸는 것을 그냥 보고만 하고 끝낸다? 그것은 제가 볼 때는 국회의 동의를 필요한 것 같은데요.

○강승규 위원 그럴 것 같아요. 위원장님 의견이 맞는 것 같아요.

○재정경제부제1차관 이형일 그러면 그 취지에 따라서 저희가 문구를 만들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예, 일단은 문구를 만들어서…… 상업적 합리성에 대해서 예외 조항을 둘지 말지도 사실은 결정을 안 했거든요. 정부가 예외 조항을 둘지 말지에 대해서 검토하는 것을 가지고 와서 검토하시고 만약에 예외 조항을 둘 경우에는 어떤 통제장치나 필요한가는 추후에 논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강승규 위원 아니, 그것에 대해서도 동의를 해야 된다고 지금……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그것은 예외 조항을 둔다고 하면……

○소위원장 정태호 그러니까 예외 조항을 둘 때 동의 여부를 얘기하는 건데 그것은 아주 가장 기본적인 사항이라서, 한번 협의를 해 가지고 문구를 만들어 오세요.

○재정경제부제1차관 이형일 예,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정태호 이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셔서 가지고 정말 신속하게 심의가, 일독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간사 간에 정리해야 될 사안이 있고 그다음에 문구를 만들어 와야 될 사안이 있고 그래서 속개는 3시쯤에 하는 것으로 하고, 그 전에 문구는 다 만들어질 수 있겠지요? 어떻가요? 어떠신가요?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아니, 일단은 저희는 가능한데……

○재정경제부제1차관 이형일 예, 저희도 최대한 준비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정태호 그렇게 해 가지고 3시에 해서 최종적으로 그것을 마무리를 짓고 그 사이에 문구 조정하고 그다음에 간사 간에 합의할 것은 하고 그렇게 하려고 그러거든요.

○차규근 위원 오후 3시까지 가능하겠습니까?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그런데 간사 간에 협의를 같이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3시까지 일단 문구 조정을 하고요. 문구 조정을 한 것에 대해서 소위에서 논의를 하고요. 그 소위 논의 끝난 다음에 간사 협의를……

○소위원장 정태호 오케이. 그러면 그렇게 합시다.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예.

○소위원장 정태호 그러면 3시에 속개를 할 테니까 그 사이에 문구를 조정해 주시고 그렇다 하더라도, 간사 간에는 워낙 친하니까……

○재정경제부제1차관 이형일 그러면 아예 회의를 4시로 하는 게 어떠신가요? 소위 회의 시간을 4시 정도……

○소위원장 정태호 4시는 좀 어려워요, 왜냐하면 다른 일정들이 좀 있어서.

○재정경제부제1차관 이형일 예,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정태호 일단 3시에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지요.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했다가 오후 3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회의중지)

(15시05분 계속개의)

○소위원장 정태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지요.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조문 정리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목적에 관한 사항입니다.

목적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정부 의견은 ‘이 법은 25년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가 서명한 대한민국 정부와 MOU를 포함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전략적 산업 분야의 협력을 강화하고 전략적 투자의 투명성·안정성 및 책임성을 확보함으로써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정부 의견이 제시돼 있고요.

이 의견에 대해서 수석전문위원실 의견은 민주적 절차 부분이 이제 국회 통제 부분으로서 중요한 의미를 갖기 때문에 빨간색으로 돼 있는 ‘전략적 투자에 대한 민주적 절차를 정함으로써’라는 자구만 더 집어넣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정태호 정부 의견이요.

○재정경제부제1차관 이형일 수용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정태호 다음 위원님들, 다 맞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이요.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다음은 전략적 산업 분야 정의 부분입니다.

정의 부분에서 대령에서 산업 분야를 더 늘릴 경우에 대비해서 부대의견을 저희가 준비해 왔습니다. 그래서 부대의견을 보시면 ‘정부는 제2조제1호사목에 따라 전략적 산업 분야와 관련된 대통령령을 제정·개정 또는 폐지하는 경우 입법예고 전에 전략적 산업 분야 선정 근거 및 경과 등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렇게 부대의견을 정리했습니다.

○소위원장 정태호 정부 입장이요.

○재정경제부제1차관 이형일 예, 수용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정태호 위원님들 의견이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참고로 아까 소관 상임위원회에 대한 문의가 있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 법 자체가 산업부장관하고 재경부장관 두 축으로 하기 때문에 소관 상임위원회는 별다른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산중위하고 재경위 이렇게 하는 것으로 법 앞에 명시를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정태호 예, 그러세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다음이요.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그다음에 세 번째, 내부통제 문구 관련해서 정부 의견은 내부통제기준을 일단 1항 ‘공사는 법령을 준수하고 전략적 투자 및 기금 운용을 건전하게 하며

자산위탁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임원·직원이 그 직무를 수행할 때에 준수하여야 할 기본적인 절차를 정하여야 한다’ 하고, 2조에는 ‘내부통제기준의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내부통제기준을 위반하는 경우 이를 조사하여 감사에 보고하는 사람(이하 준법감시인)을 1인 이상 두어야 한다’. 그리고 3항은 ‘공사의 사장은 이사회 의결과 운영위의 승인을 얻어서 준법감시인을 임명한다’. 다음 페이지 4항은 준법감시인의 요건에 대해서는 대령에 위임하는 사항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수석전문위원실 의견은 정부 의견에 따르는 것입니다.

○소위원장 정태호 위원님들 의견이요?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이요.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그다음에 전략적투자 및 상업적 합리성의 원칙에 대한 부분인데요. 2페이지 보시면 상업적 합리성의 원칙에 대해서 정부 의견은 ‘2조 2호에 따른 대미투자는 상업적 합리성 확보를 원칙으로 한다’, 예외 사항으로 ‘다만 국가안보 또는 공급망 안정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했고.

2항에서는 이 경우에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돼 있고, 3항에서는 ‘보고는 비공개로 하며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 및 관계 공무원은 보고로부터 알게 된 내용을 공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돼 있고.

저희 전문위원실 수정의견은 3페이지 정부 의견 두 번째 ‘산업통상부장관은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 미국과 협의를 수시로 진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라는 부분의 각 호의 사항을 저희는 4조의 기본원칙에다 같이 담았습니다.

왜냐하면 3페이지에 있는 산업통상부장관이 실무적으로 미국과 협의하는 사항에 대해서, 수시로 협의하는 사항에 대해서 법률에 근거를 둘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나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각 호의 사항을 들고 와서, 2페이지 수석전문위원 수정의견을 보시면 정부 의견 1항은 안 받아들인 건데요 저희는 1항은 소위 때 논의가 된 것이기 때문에 그 원칙이 ‘전략적투자는 상업적 합리성 확보를 원칙으로 하되 국민경제 발전 및 산업 경쟁력 강화 등 국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라고 해서 소위에서 논의했던 사항을 일단 1항에 살렸고요.

그다음에 2항은 아까 산업부장관이 협의할 때 준수하는 사항을 ‘정부는 미국과 협의하는 경우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한다’라고 그대로 따왔습니다. 따왔고, 3항에 상업적 합리성에 대한 예외 규정을 넣었습니다. ‘정부는 1항에도 불구하고 국가안보 또는 공급망 안정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상업적 합리성이 확보되지 않은 전략적투자를 추진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 국회 상임위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정태호 정부 입장이요.

○재정경제부제1차관 이형일 먼저 저희 정부안을 일단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중에 수석전문위원이 수정한 1항의 경우에는 사실상 약간 논의가……

이게 있고 그다음부터 저희 정부안을 1항을 2항으로 밀어도 병합이, 같이 있더라도 큰 이슈는 없을 것 같습니다마는 앞에 있는 ‘전략적투자’라는 단어가 저희는 ‘대미투자’로 쓰고 있습니다. 전략적투자 안에는 조선 분야까지도 다 포함된 워딩이라서 그렇게 되면, 상

업적 합리성은 대미투자와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스코프를 좁혀서 대미투자로 한다면 저희는 1항도 받을 수 있다 말씀을 드리고요.

○소위원장 정태호 대미투자는 상업적 합리성 확보를 원칙으로 한다?

○재정경제부제1차관 이형일 예. 그렇게 하고 바로 2항을 정부안에 있는 1항이 2항이 되고 3항, 4항이 되면 저희는 괜찮다고 보고 있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의 2항에 대해서는 산업부에서 좀 더 설명이 필요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준수사항 내용은 맞는데 산업부장관의 물을 없애고 이것을 넣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추가로 의견을 들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3항의 경우는 사실은 저희 2항하고 겹치는 내용입니다. 결국에는 예외의 경우에 동의를 받으라는 내용이기 때문에 사실은 정부 의견 2항하고 수석전문위원의 3항하고 콘텐츠는 같고요. 워딩에서 ‘전략적투자’는 ‘대미투자’로 바뀌어야 될 거라는 것은 같은 생각입니다.

그래서 2항과 3항을 보시면서 선택하는데 저희 안은 시간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 수석전문위원의 3항에는 동의를 받도록 돼 있는데 동의를 어떤 타이밍이 없는데 저희는 운영위원회가 의결하고 나서 가기 전에 동의를 받도록 하자 해서 이 시간을 특정했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내용은 실질적으로 같습니다.

○산업통상부차관 문신학 수석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우선 4조에 재정부차관이 이야기한 것에 대해서 산업부도 같은 의견이고요. 2항과 관련해서는 수석전문위원 의견을 저희들 수용합니다.

다만 건의드리시는 것은 말씀처럼 ‘산업부장관이 수시로 대미 협의를 하며’라고 하는 부분이 법 조항에 들어가는 부분이 좀 어색한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은 4조 2항을 하면서 부대의견 식으로 산업부장관이 수시로 대미 협의를 하면서 이런 부분 쪽에 뭐 하는 것을 한다라고 하는 식의 부대의견을 좀 하나 달아 주시면 어떨까 하는……

지금 이 부분의 촉발이 사실은 사업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인 산업부장관한테 미국에 가서 수시로 할 수 있게 하는 것을 맨데이트나 권한이 좀 있게 하자라고 하는 차원인데 저희들이 법 조항에 ‘수시로’라는 말을 넣기를 건의드렸습니다마는 그 부분이 법조항에 넣는 게 어색한 부분이 있다면 이걸 2항으로 수석전문위원 의견처럼 그대로 하되 부대의견에 수시로 산업부장관이 대미협의를 하면서 이런 4조 2항을 준수해서 하라는 취지이다라는 식의 부대의견이 하나 달려 있으면 어떨까 하는 건의를 드립니다.

○차규근 위원 좀 헛갈려 가지고 질문이 있는데 아까 재정부차관님께서 4조 1항의 ‘전략적투자’를 ‘대미투자’로 문구를 바뀌어야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재정경제부제1차관 이형일 예.

○차규근 위원 그런데 4조 제목 자체가 전략적투자인데 그러면 제목도 대미투자로 바뀌어야 되는 것이지?

○재정경제부제1차관 이형일 제목을 저희는 ‘상업적 합리성의 원칙’이라고 그 왼쪽에 보시면, 정부안에 보면 조 제목을 바꾼……

○차규근 위원 제목도 ‘상업적 합리성의 원칙’으로 바꾸고?

○재정경제부제1차관 이형일 예.

○차규근 위원 그리고 또 2호에 보면 ‘전략적투자’라는 용어가 있고 또 4호에 보면 또

‘대미투자’라는 용어가 섞여 있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그대로 뒀도 되는지 아니면 어떻게 되는가요? 이게 막 섞여 있어서, 또 수석전문위원 수정의견 3항에도 ‘전략적투자’라는 용어가 나오거든요. 뭔가 약간 혼란스러운 느낌이 들어서……

○박지혜 위원 ‘전략적투자’를 다 ‘대미투자’로 바꾸면 되는 건가요?

○재정경제부제1차관 이형일 기본적으로 2000억 불은 대미투자, 나머지 조선까지 다 합친 것을 전략적투자 이렇게 저희가 정의가 돼 있거든요.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그런데 2항 3호에 보면 ‘전략적투자 사업에 대한 미국 정부의 지원 필요 사항을 검토하고 미국과 협의하여야 한다’, 그다음에 2호도 전략적투자, 2호·3호 같은 경우에 조선까지 다 포함이 되는 거니까 제목은 그냥 전략적투자로 포괄하는 게 낫지 않나 싶고 상업적 합리성 부분만 대미투자로 바꾸는 것이 어떨지……

○소위원장 정태호 이 법 자체가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이잖아요.

○재정경제부제1차관 이형일 그렇습니다. 전체를 다 커버하기는 하는데 조선 투자는 저희가 상업적 밸런스로 우리가 하는 거니까 굳이 이렇게 필요가 없고 대미투자에 대해서는 좀 타이트한데 어떤 거에는 대미투자 어떤 데에는 전략적투자를 구분해서 쓸 필요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문에 섞여 있긴 한데 내용상으로 보면 그렇게 되는 게 저희는 맞아 보이긴 합니다.

○소위원장 정태호 그러면 제목을 ‘상업적 합리성의 원칙’으로 하자라는 거예요?

○박지혜 위원 제목은 ‘전략적투자의 기본원칙’으로 해도 되지 않을까요?

○재정경제부제1차관 이형일 예, ‘전략적투자의 기본원칙’으로 하고, 그게 오히려……

○소위원장 정태호 그러니까 제목은 ‘전략적투자의 기본원칙’으로 하고.

○박지혜 위원 1항의 ‘전략적투자’는 ‘대미투자’로 하고?

○재정경제부제1차관 이형일 예, 대미투자로 하고.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1항하고 3항의 ‘전략적투자’를 ‘대미투자’로 바꾸면 되고요. 그다음에 정부안 3항이 저희는 따로 이렇게 두지 않았는데 정부안 3항을 따로 둘지에 대해서 결정해 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산업부에서는 산업부장관이 수시로 협의할 수 있는 것을 부대의견으로 달아 달라고 했는데 2항에서 정부는 이 사항을 준수하여야 된다고 돼 있어서 굳이 부대의견을 안 달아도 산업부장관이 수시로 협의할 때도 이 각 호의 내용을 준수하는 것으로 저희는 해석이 되기 때문에 부대의견은 좀 필요없다고 생각이 들고.

다만 정부안의 4조 3항은 따로 살릴지 아니면 그냥 삭제할지 그것을 결정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지혜 위원 저는 4조 3항은, 공개와 관련한 부분은 별도의 조문에서 규율하고 있으니까 굳이 여기서 다시 또 이것만 규율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조금 더 의견을 구하고.

말씀하신 쟁점 중에 지금 수석전문위원께서 제시하신 4조 3항의 사전의 부분이 정부안에서는 4조 2항에 조금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데 그 부분은 반영되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그 부분은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경제부제1차관 이형일 말씀하신 공개·비공개와 관련해서는 아까 오전에 저희가

논의했던 것은 자료와 관련해서 제출을 할 때 비공개로 할 거냐 하는 건데 이 건은 개별 프로젝트지 않습니까? 그리고 개별 프로젝트는 아까 산업부 의견 좀 더 첨언이 가능하겠습니다만 트럼프 대통령의 생각을 보면 본인이 먼저 발표를 할 때까지 누군가 먼저 발표를 하면 이것을 가치를 떨어뜨려서 추가로 더 협의할 때 저희가 불리한 입장에 처해질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큼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굉장히 대외보안이 중요하고 저희도 현재 보안각서를 쓰고 지금 프로젝트를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개별 프로젝트를 사전보고까지를 저희가 준비를 했지만 이게 나갈 경우에는 굉장히 국익에 손해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꼭 이 보고는 비공개를 전제로 해야 된다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허영 위원 그럴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박지혜 위원 저도 동의합니다.

○차규근 위원 궁금한 게 2000억 불이 대미투자고 조선업까지 합한 전체가 전략적투자라는 말씀이신데 혹시 정의 조항에 그걸 규정하는 조항이 따로 있습니까, 대미투자는 뭐고 전략적투자는 뭔지?

○재정경제부제1차관 이형일 예, 있습니다. 2조 2호에 있습니다.

○강승규 위원 오케이. 그리고 지금 박지혜 위원 제안하신 것에 정부 4조 3항 넣어 가지고 그렇게 정리하지요.

○허영 위원 그렇게 하시지요.

○강승규 위원 이해하시지요?

○산업통상부차관 문신학 문구에서 하나만, ‘대미’하고 ‘전략적투자’ 부분 쪽이 구분이 돼 있기 때문에 4조 2항 2호는 ‘대미투자’로 바뀌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2호는 ‘대미투자 사업에’, 그다음에 그 밑에 ‘대미투자 사업의 프로젝트 매니저’, 그렇게 2호는 ‘대미투자’로 바뀌고 나머지 호들은 다 ‘전략적투자’, ‘대미투자’ 용어가 맞습니다.

○재정경제부제1차관 이형일 3호는 전략투자.

○박수영 위원 4호는 대미투자?

○산업통상부차관 문신학 대미투자, 그게 맞습니다.

○박상웅 위원 2호, 4호가 대미투자?

○산업통상부차관 문신학 예, 2호 대미투자이고요. 4호가 대미투자입니다.

○재정경제부제1차관 이형일 그리고 부대의견 사항은 아직 안 해 주셨습니다.

○소위원장 정태호 4호는 대미투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해 봅시다. 그러면 전문위원님, 어떻게 정리를 하면 좋겠어요?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조명은 ‘전략적투자의 기본원칙’으로 하고요. 1항의 ‘전략적투자’는 ‘대미투자’로 바꾸고 그다음에 2호의 ‘전략적투자’는 ‘대미투자’로 바꾸고요.

○소위원장 정태호 2항은 그대로 두고?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예, 2항 2호요.

○소위원장 정태호 그러니까 1항은 그렇게 바꿨고 2항은 그대로 두고 그다음에 2항 2호를 ‘전략적투자’를 ‘대미투자’로 바꾸고?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예. 그다음에 4호에 있어서도……

○소위원장 정태호 4호는 그대로 대미투자로 돼 있고.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3호는 그대로 두고요. 그다음에 3항을 ‘전략적투자’를 ‘대미투자’로 바꾸고요. 정부안의 3항을 4항으로 가져오고요.

○박수영 위원 그러면 마스가는 상업적 합리성을 안 한다는 뜻인가요, 1500억 불? 마스가는 왜 상업적 합리성 논의에서 빼는 거지요?

○산업통상부차관 문신학 마스가 부분 쪽에 있어서는 우리 기업들이 이미 다 검토를 해서 베이스에서 먼저 출발을 합니다. 그래서 상업적 합리성이 안 될 때는 우리 기업들이 애초에 시작을 아예 안 하는 것이 기본으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것을 전제로 해서 MOU에서도 그래서 어프루브드 인베스트먼트(approved investment)라고, 승인된 투자라고 하는 개념으로 그렇게 들어가 있는 이유가 그 부분들을 다 인정하는 상태에서 출발을 한다고 하는 개념입니다.

○박수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쨌든 마스가, 조선 투자도 상업적 합리성을 기업이 이미 판단했다는 것 아닙니까?

○산업통상부차관 문신학 그렇습니다.

○박수영 위원 그러면 여기서 굳이 마치 마스가는 상업적 합리성이 없는 것처럼 하는 인상을 주는 조문을 만들 필요가 있는 것인가요?

○산업통상부차관 문신학 MOU에 보면 투자 선정에 있어서 투자위원회는 상업적으로 합리적이라고 판단되는 투자만을 대통령에게 추천한다라고 되어 있어서 애초에 2000억 불을 상정을 하고, 2000억 불짜리를 생각하고 MOU에 들어가 있는 개념입니다.

○차규근 위원 그러니까 이게 만일에 상업적 합리성 그 용어가 그렇게 확정이 돼 버리면 MOU에 충돌되는 면이 좀 있고 우리 스스로 발목을 잡는 결과……

○허영 위원 왜냐하면 상업적 합리성에는 5 대 5하고 그 후의 기간에서 1 대 9 조항까지 구체적으로 돼 있기 때문에……

○박수영 위원 그러면 산업부차관님, 4조 2항 2호에 전략적투자를 대미투자로 바꾼다면 서요. 그러면 우리 벤더, 우리 법인단체 이런 것 쓰는 건데 그러면 이것을 마스가에는 또 안 쓴다는 뜻입니까?

○산업통상부차관 문신학 마스가에는 이것보다도 훨씬 더 들어간다는 말씀입니다.

○박수영 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마스가를 포함한 전략적투자 전체의 기본 아닌가요? 그런 거 아닙니까?

○산업통상부차관 문신학 그런데 용어가 두 개가 구분이 되어 있지 않으면 사실 MOU 상에서 원리금 상환과 관련된 5 대 5의 문제라든지 20년 상환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마스가가 아니라 2000억 불짜리에만 해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의 조항부터 애초에 그냥 인베스트먼트와 어프루브드 인베스트먼트를 MOU에서도 구분을 하고 이 법에서도 정의 조항에서부터……

○박수영 위원 그것은 제가 보기는 아직 좀 정리가 덜 된 것 같은데 수석전문위원님하고 산업부하고 다시 해 가지고 소소위 간사 회의에다 부칠 때까지 한번 더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예, 알겠습니다.

○박수영 위원 이렇게 해 놓으면 마치 마스가는 우리 벤더 안 쓴다는 식으로 배제되는 것처럼 보이는, 반대해석을 하면 그렇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그런 점이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요.

○소위원장 정태호 그러시지요.

○재정경제부제1차관 이형일 제가 한 가지 첨언드리면 수석전문위원이 제안한 빨간색으로 돼 있는 3항하고 정부안의 1항, 2항이 묶어서 쓰면 이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의견을 주시면 이 두 개를 병합해서 하나로 잘 다듬을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차이가 나는 것은, 시기가 없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시기를 추가해서 넣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시기를 집어넣겠습니다.

○소위원장 정태호 이 조항을 좀 합의된 조항으로 다시 가져오시지요.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그리고 다만 정부안 4조 3항에 있어서 누설 금지 의무를 뒀는데 뒤의 벌칙과 관련해서 벌칙이 사실 3단계거든요. 1단계는 2년 이하의 징역,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요. 두 번째 단계는 1년 이하의 징역,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요. 세 번째 단계는 과태료입니다. 그래서 3항을 위반했을 때 어떤 벌칙을 적용할지에 대해서는 좀 정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정태호 그걸 어디다 넣어야 되는데요?

○재정경제부제1차관 이형일 뒤에 벌칙 조항에 따로 담게 되는데요. 세 가지 그룹 안에……

○소위원장 정태호 그러니까 벌칙 조항 여기 있어요?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아닙니다. 이거를 어떤 단계의 벌칙에 적용을 해야 될지……

○박지혜 위원 무거운 단계로 해야 되지 않을까요?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제일 무거운 단계는 2년 이하의 징역,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박상웅 위원 그 상대가 국회라는 것 아니에요?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그렇습니다.

○박상웅 위원 국회의원이 혹시 어디 가서 누설할까 봐 잡아넣겠다는 것 아니에요?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예.

○박상웅 위원 아니, 관계 공무원 보고로부터 알게 된 국회의원들이 나가서 떠들어서 누설되면 처벌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이게 정상적인 조항 맞나?

○소위원장 정태호 책임을 더 무겁게 물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공직에 있는 사람이 그 책임감부터 크게 가지고 해야지 일반인들이야 모르고 그러다 치더라도 공직자는 가장 책임을 크게 가져야 될 사람이 누설했다 그러면 그 책임을 더 크게 물어야 될 것 같은데?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그러면 2년 이하의 징역,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재정경제부제1차관 이형일 현재 벌칙 조항에 비밀 누설 의무를 위반한 경우는 공통으로 다 2년으로 돼 있습니다.

○차규근 위원 그런데 그런 건 어떻게 되는가요? 정보위원회 같은 경우도 국정원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이후에 이제 정보위원이 또……

○박수영 위원 간사가 대언론 브리핑을 하고 나머지는 비밀 누설 의무를 가지고……

○차규근 위원 다 적용이 되는 건가요?

○박수영 위원 예, 적용되고 간사는 합의한 내용을 언론 브리핑을 하고.

○차규근 위원 그러면 간사가 브리핑하는 것은 정보위법에도 위반되지 않는 건가요?

○소위원장 정태호 그거는 위원회의 결정에 의해서 하는 거니까.

○차규근 위원 그런가요? 그런데 간사가 협의가 아니라 의원 개인이 하는 건 다……

○박수영 위원 하면 누설죄에 해당하는……

○차규근 위원 그거 그러면 그 처벌 수준하고 이것하고는 어떻게 되는지, 그것 맞추는 것이 어떨까 싶은데 정보위원회 그것도 이것하고……

○소위원장 정태호 정보위원회는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비밀누설죄? 한번 확인해 보세요.

○박수영 위원 다시 확인해서 그것 추가로 보고하십시오.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예,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정태호 일단 다음 가서 하고.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3페이지입니다.

운영위원회와 사업관리위원회의 이원화 구조에 대해서 정부 의견은 제9조 5항을 만들어서 ‘사업관리위원회와 운영위원회는 전략적투자 추진 과정에 있어 의사결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긴밀하게 협력하여야 한다’.

○박수영 위원 당연한 것 아니에요? 당연한 거 아닌가? 이 조항이 필요합니까?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여기서 수석전문위원 의견은 실익이 크지 않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박수영 위원 재정부하고 산업부하고 맨날 싸웁니까? 이런 조항까지 넣어야 됩니까?

○산업통상부차관 문신학 아닙니다. 어제 이 부분을 좀 더 효율적으로 하게 하는 문구나 그런 것을 고민을 좀 해 달라는 말씀이 있으셨고, 그래서 그 부분 쪽을 고민하다가 이런 의무조항 같은 것을 하나 넣는 건 어떨까라는 아이디어 차원에서 하나를 만들었습니다.

○차규근 위원 주의적으로 두더라도 문제될 것은 없을 것 같습니다.

○박상웅 위원 어떻게 보면 사족 같고 어떻게 보면 필요한 것 같고……

○박수영 위원 수석전문위원님 의견은 어떠세요?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저는 실익은 없다고 봅니다. 원래 사업관리위원회가 운영위원회 체계가 있고 지금 그 체계 내에서 이루어진 사항인데 그 이루어진 사항에 대해서 좀 당연한 말을 쓰는 것 같아 가지고요 규정의 실익은 좀 낮은 것으로 보입니다.

○박지혜 위원 이 비효율에 대한 쟁점을 제기할 때는 두 위원회에서 한 위원회가 결정한 것에 다른 위원회가 기속이 된다는지, 뭔가 의사결정 과정에서 그런 중복되는 쟁점에 대한 다른 판단이 나오는 것에 대한 우려라든지 이런 것들을 구조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가에 대한 의문이 있어 가지고 그런 걸 대비할 수 있는 뭔가가 필요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 때문에 비효율에 대해서 대책을 마련할 수 있으면 마련해 오라는 거였고, 저는 주의적인 규정은 사실 별로 필요 없는 것 같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그러니까 김병기 의원안에서는 지금 체계가 사업관리위원회하고 운영위로 넘어가서 최종 의사결정이 운영위에게 주어지는데 처음에는 사업관리위원회 차원에서 산업부장관한테 협의할 수 있도록 했던 그 규정들을 끊어 냈기 때문에, 사실

지금 일원화된 체제로 이제 정비가 됐기 때문에 지금과 같이 5항을 두는 것은 좀 사족 같은 느낌이 듭니다.

○소위원장 정태호 그러니까 이런 표현 자체는 사족이고, 예를 들면 운영위원회가 최종적인 결정권을 가진다라든가 아니면 각자의 결정에 필요한 자료의 요구 시 협력해야 된 다든가 그렇게 좀 구체적으로 해야지, 그냥 협력해라 그러면 협력 안 한다고 하지 뭐라 그러겠어요.

○박수영 위원 모르는 사람은 맨날 싸우는 줄 알겠어.

○소위원장 정태호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하니까 좀 사족처럼 보여지는 거지요. 어떠세요?

○박수영 위원 저는 사족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소위원장 정태호 다들 사족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산업통상부차관 문신학 그런데 지금 이 조항이 없는 상태에서도 이미 하이어라키(hierarchy)가, 운영위원회가 최고의결기구가 돼 있고 사업추진위원회는 그 밑에서……

○소위원장 정태호 아니, 그 둘 관계를 명확하게 표현을 안 해 놓으면 나중에 실제로 일하는 과정에서는 일종의, 최악의 경우는 주도권 싸움이 생길 수도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최종결정권은 누가 가지고 있다 이렇게 딱 표현해 주면 그 최종 결정을 위해서 관련된 기관들은, 기구들은 그 최종적인 결정 기관에 다 따르게 돼 있는 그런 구조로 나와야 되는 거지.

○재정경제부제1차관 이형일 현재 법상 최종 결정기구는 운영위원회고요 그렇게 정리 돼 있습니다. 그래서 5항은 저희가 드롭하겠습니다.

○박상웅 위원 밑에 보면 대통령령으로 또 세부사항을 정한다고 했으니까, 이 관계가.

○소위원장 정태호 그러면 이것은 뺐시다, 삭제. 다음.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그다음에 6조 2항 산업부장관의 수시 진행은 아까 얘기했다시피 그 전 페이지에 들어가서 이것은 불필요하다고 보고요.

다음으로 사정변경에 따른 대미투자 중단·조정하고……

○소위원장 정태호 잠깐만, 불필요하다는 건 안 한다라는 거지요? 없앤다는 거지요?

○재정경제부제1차관 이형일 산업부에서는 부대의견으로 좀 담아 주십사 하는 취지인데 아까 논의가, 진도가 거기까지 안 나간 것 같습니다, 부대의견 채택 여부에 대해서.

○소위원장 정태호 그러니까 지금 6조 이것을 부대의견으로 해 달라는 거예요, 아니면 뭘 해 달라는 거예요?

○산업통상부차관 문신학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가 좀 다른 쪽으로 가는 것 같으니까요 저희 쪽은 이 부분에 대해서 수석전문위원실 의견을 받아들여서 그냥 삭제하는 것에 대해서 수용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정태호 지금 김병기 의원안 제6조제2항 수정 이 부분 얘기하는 거지요?

○산업통상부차관 문신학 예,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정태호 그러면 이것은 삭제요.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다음으로 사정 변경에 따른 대미투자 중단 및 조정하고 산업부장관의 대미협의 준수사항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는 ‘중대한 변경 시 대미협의’라는 조항

을 새로 만들어서 ‘미국의 통상정책 변화 등 중대한 변경이 발생하여 대미투자의 상업적 합리성 또는 양해각서의 주요 내용이 실질적으로 변경된 경우 산업통상부장관은 운영위 의결을 거쳐 대미투자 집행 등에 대해 미국과 협의할 수 있다’ 이렇게 의견을 제시했구요.

수석전문위원실에서는 기존에 나온 제정안들을 바탕으로 조항을 신설해서 ‘전략적투자 환경 변화에 따른 조치’ 해 가지고 1항에 ‘산업부장관은 미국의 통상 환경 또는 관련 법령·판례 등에 중대한 변경이 발생하여 대미투자의 상업적 합리성 또는 양해각서의 주요 내용이 실질적으로 변경된 경우 또는 전략적 투자 목적 달성이 어렵거나 과도한 손실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운영위 의결을 거쳐 대미투자 집행 중단 등에 대해서 미국과 협의할 수 있다’, 그때 문제가 됐던 것은 처분이나 상환을 요구하면 이게 MOU에 없는 거기 때문에 중단으로 용어를 한정해 왔고요.

그다음에 2항의 사항은 소위 논의 때 ‘상임위원회가 미국 통상 환경 또는 관련 법령·판례 등에 중대한 변경이 발생한 경우 전략적 추진 방향에 관하여 운영위원회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그리고 이 경우 운영위원회는 의견 제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의견에 대한 검토 결과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렇게 해서 2항에 대해서는, 정부는 이 부분에 대해서 포함하지 않고 있는데 수석전문위원실 의견은 소위에서 상임위도 이런 중대한 변경이 발생할 경우에는 운영위에 의견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주셨고, 다만 최초 의원안은 이에 기속된다라는 건데 기속되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이 부분은 빼고 의견 제시할 경우 운영위원회가 그 의견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하는 걸로 수정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정태호 정부 입장이요.

○재정경제부제1차관 이형일 1항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가 정부 의견을, 대안을 낸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보시면 ‘미국의 통상정책 변화 등 중대한 변경이 발생하거나 대미투자의 상업적 합리성의 실질적인 내용이 변경된 경우 산업부장관은 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 대미투자 집행 등에 대해서 미국과 협의할 수 있다’ 이 조항을 1항의 대체안으로 지금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항에 대해서는 오늘 오전에 중대한 변화가 있을 때는 국회에 사전 보고하도록 저희가 규정을 뒤에 따로 두기로 했습니다. 그때 보고하게 되면 이런 일은 당연히 따라올 것 같은데 그러면 의견 제시는 당연히 가능할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이후의 처리는, ‘30일 이내’ 이런 것은 저희가 미국하고 협상 결과도 달려 있기 때문에 좀 제약적인 규정처럼 보입니다.

○소위원장 정태호 위원님들 의견이요.

○박수영 위원 우선 이 조문의 제명과 1항에 대미투자와 전략적 투자가 또 막 섞여 있는데 정확한 구분을 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제명과 조문 내에 막 섞여 있거든요.

○허영 위원 이것은 섞여 있는 게 맞습니다.

○박수영 위원 맞습니까? 맞으면 다행인데 이게 막 섞여 있어서 과연……

○허영 위원 상업적 합리성이라는 것은 대미투자에만 적용이 되는 원칙입니다.

○박수영 위원 그러면 그 밑에는, 전략적 투자의 목적 달성이 어려운 경우에 운영위원

회 의결을 거쳐서 대미투자 집행 중단…… 전략적 투자가 어려운데 왜 대미투자를 중단 하나요?

○허영 위원 ‘또는’이잖아요. ‘대미투자 또는 전략적 투자가 손실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그러니까 여기는 분명히 대미투자과 전략적 투자를 구분하고 있는 겁니다.

○재정경제부제1차관 이형일 그래서 저희 정부 대안을 보시면 대미투자도 통일돼 있습니다.

○박수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좀 헷갈리게 되어 있다.

○강승규 위원 이것은 맞지가 않지요. 박수영 위원님 의견이 맞지요.

여기다가 ‘또는 전략적 투자와 목적 달성’이라 그러면 마스가까지 포함한다는 거잖아요, 이것은. 그러면 이게 위에 하고 또……

○소위원장 정태호 제목이 정부 원안은 ‘중대한 변경 시 대미 협의’고 수석전문위원 의견은 ‘전략적 투자 환경 변화에 따른 조치’ 이렇게 돼 있는데, 중대한 변경 시 대미 협의로 하면 포괄적으로 2개가 다 포함될 수 있는 것 같고, 그런데 제목을 전략적 투자 이렇게 해 버리면 안에 대미투자 이런 것도 들어가고 그러니까 좀 헷갈리는 것 같아.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그런데 상업적 합리성이 해당되는 부분에서는 대미투자도 저희가 워딩을 했고요.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MOU나 자체의 어떤 전제가 흔들리는 경우에는 전략적 투자도 그냥 포함시키는 게 타당하지 않느냐 싶어 가지고 전략적 투자로 잡았습니다.

○박수영 위원 자세히 한번 보시면, 1항의 밑의 세 줄을 보시면 전략적 투자의 목적 달성이 어려운데 하는 일은 대미투자 집행을 중단한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주문과 조문이 맞지 않아요. 그래서 한 번 더 꼼꼼하게 보실 필요가 있다. 지금 너무 급하게 해서 그런 것 같아요.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그러면 이 부분은 다시 보고요.

○박수영 위원 다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결정할 게 아니라.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일단 이게 저희가 대미투자만 집중해서 규정할 필요가 있을지 아니면 전체 전략적 투자…… 조선 협력 투자까지 포함하는 게 실익이 있을지 그것을 좀 꼼꼼하게 따져서……

○박수영 위원 그것을 아까 앞에서 다시 보기로 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보고 거기와 연계해서 이것도 조문이 정리될 필요가 있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예, 알겠습니다.

○강승규 위원 그다음에 지금 정부 의견은 ‘대미투자의 집행 등에 대해서 미국과 협의할 수 있다’ 이렇게 완화된 표현을 썼고, 지금 수석전문위원은 ‘대미투자 집행 중단 등에 대해’ 이렇게 좀 강하게 표현을 썼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정부가 동의 안 하는 거잖아요.

○산업통상부차관 문신학 예, 저희들은 좀 더 포괄적으로 ‘대미투자의 집행’이라고 해도 그것의 의미에는 당연히 중단까지가 포함되기 때문에, 계속 드리는 말씀이 실질적인 효과는 있으면서 미국과의 불필요한 마찰은 피하는 방법으로 중단이라는 말은 빼고 ‘대미투자 집행 등에’라고 하면 실질적인 법령의 효과는 동일하다라고 생각해서 중단이라는 말은 빼기는 했습니다.

○강승규 위원 아니, 그런데 이 조항의 목적 자체가 변화, 중대한 변경 등으로 이 계약의 내용을 어찌 됐든 중단이든 뭐든 바뀌야 된다고 해야 되는데 그냥 실제 결론에서는 대미투자 집행 등에 대해 미국과 협의할 수 있다, 미국에서는 MOU 등에 대해서 그런 것 있다 하더라도 바꿀 수 없어 이럴 것 아니에요. 그러면 이것은 있으나 마나 한 조항이지, 만약 그렇게 되면.

그냥 포괄적으로 포함하는 게 아니라 여기 집행 등에 중단이 들어가 있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다는 게 지금 문 차관님의 해석이지만 실제 이 조항은 자칫하면…… 그러더라도 집행에 대해 협의는 할 수 있지만 아무것도 못 하는 거지.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원래 제정안에서는 투자금의 회수, 투자금의 처분 이렇게 돼 있어 가지고, 이것은 MOU에 없는 용어라 가지고…… MOU는 중단에 대해서는 협의할 수 있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 용어를 집행 중단으로 바꾼 겁니다.

○강승규 위원 글썄, 지금 그것도 쓰지 말자는 거니까.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그런데 MOU에 있는 용어를, 중단에 대해서 협의할 수 있도록 MOU에 돼 있기 때문에 중단이라는 용어는 법에 해도 상관없다고 생각이 되고, 다만 그때 문제가 됐던 것, 회수·처분 등은 MOU 용어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좀 바꾸자 그래서 집행 중단으로 바꾼 겁니다.

○소위원장 정태호 지난번 회의에서 MOU에 있는 표현을 그대로 쓰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회의에서 합의가 됐던가요?

○박수영 위원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정태호 그러니까 중단이라는 용어는 MOU에 들어 있기 때문에 쓸 수는 있는 거고.

그런데 이게 여하튼 간에 개념들이 막 섞여 있으니까 되게 혼란스럽다라는 거거든요. 깔끔하지가 않아.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죄송합니다. 시간이 없어 가지고요.

전략적 투자하고……

○소위원장 정태호 이것은 좀 정리해 가지고……

○박상웅 위원 수석전문위원 말씀 중에 대미투자에 문제가 있는 경우 또는 전략적 투자 이렇게 되는 경우 끌어 넣고 중단은 뭘 중단하느냐? 대미투자 집행을 중단한다. 그러면 대미투자가 문제가 있어서 대미투자를 집행하는 건 이해 가는데 전략적 투자까지 끌어 넣으면 너무 그러니까, 그러면 밑에 대미투자 집행 중단을 대미를 빼 버리고 투자 집행을 중단한다든가 이렇게 해 버리면 이쪽이든 저쪽이든 되는데 이렇게 전략적 뭐 해 놓고 중단은 대미투자를 중단하고 이게 좀……

○강승규 위원 용어 정리하십시오.

○소위원장 정태호 잠깐만요, 1항은 개념들이 너무 막 혼란스러우니까 문구를 정리해 주시고.

아까 2항 부분에서 ‘30일 이내에 보고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좀 부담스러워했잖아요.

○재정경제부제1차관 이형일 예, 저희는 2항 자체를……

○소위원장 정태호 그러니까 우선은 2항 자체가 뒤에 있기 때문에 차라리 거기서 정리

하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이고.

○재정경제부제1차관 이형일 예, 뒤에 나오는 중대 사항 등을 보고하게끔 하는 조항……

○소위원장 정태호 두 번째로는 ‘30일 이내에 답변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협상 중인 상황에서 30일을 지키는 게 만만치 않다 이 취지거든요. 그래서 2항을 여기에 둘 것인지의 문제 하나와 두 번째로 30일이라는 내용을 둘 것이냐 이 두 가지에 대해서 결론을 내리고 가야 돼요. 어떠세요, 위원님들?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뒤에 나온 얘기는 정부가 중대한 변경이 있다고 판단했을 때 보고하는 거고요. 지금 여기에 나온 것은 국회 상임위에서 요구를 하는 거거든요. 국회에서 판단하기에 중대한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 의견을 제시하는 거기 때문에 누가 의견을 제시하고 그런 상황을 판단하느냐의 주체가 다르기 때문에 뒤의 거랑 좀 다른 얘기라고 저희가 판단을 했습니다.

○소위원장 정태호 그러면 표현을 명확하게 해야지. 예를 들어서 ‘소관 상임위가 이렇게 판단할 경우’라고 하든지 그걸 명확하게 해 줘야지.

○박지혜 위원 그런데 지금 60페이지라고 레퍼런스를 달아 주셨는데 저희가 이런 논의를 한 적이 있나요?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죄송합니다. 58페이지입니다. 묶여 있어 가지고요. 58페이지 하단의 수정의견 보시면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차규근 위원 그러면 저도 의견……

○소위원장 정태호 예, 의견 주세요.

○차규근 위원 먼저 정부 의견에 의하면 ‘미국의 통상정책 변화 등 중대한 변경’인데 수석전문위원 수정의견은 ‘미국의 통상 환경 또는 관련 법령·판례 등에 중대한 변경이 발생’, 이렇게 좀 다릅니다. ‘정책’이 빠져 있는데, 환경이라는 건 약간 어쩔 수 없는 두려운 느낌이고 정책은 미국의 자체적인 정책 변경 같은 상황이 떠오르는데, 그렇다면 수석전문위원의 ‘통상 환경 또는 관련 법령·판례 등 중대한 변경’이 약간 뭔가 부적합한 게 아닌가라는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환경·정책’이라고 넣든지, 오히려 뒤에 ‘관련 법령·판례 등’으로 너무 구체화하다 보니까 예상하지 못한 통상 환경·정책이 변화했을 때는 해당이 되는지 안 되는지, 불필요한 발목 잡기가 되는 건 아닌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논의할 때 그 점도 검토를 한번 해 봐 주시고요.

아까 집행 중단 관련해서 회수라는 원래 문구가 너무 강해 가지고 아마 중단으로 한 거다, 산자부차관님 말씀하신 것처럼 혹시 중단도 외교적으로 부담이 되는 워딩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정부 의견처럼 ‘집행 등’이라는 게 너무 모호하게만 돼 있어서 한계가 있는데, 저는 이 경우에 어차피 중대한 변경이 있을 때 협의하는 거니까 ‘대미투자 집행 변경 등에 대해서 협의할 수 있다’ 그러면 변경되는 원인이 있으니까 뒤에 ‘변경에 대해서 논의할 수 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큰 외교적인 부담 없이 할 수 있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것도 한번 이따가 같이 논의를 해 봐 주시지요.

○산업통상부차관 문신학 예.

○소위원장 정태호 제가 조금 전에 얘기했던 2번 부분……

○강승규 위원 수석은 2번 부분 살려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소위원장 정태호 위원님들 의견을 내 보시지요.

○강승규 위원 저도 살려야 된다고 봅니다.

○허영 위원 살려야 합니다.

○박수영 위원 ‘30일 이내’ 이런 것 필요한가요?

○강승규 위원 국회 보고하는 거니까……

○박수영 위원 ‘신속히 보고하여야 한다’ 그냥 이렇게, ‘신속히’가 30일인지 60일인지 알 수 없으니 그냥 그 정도로 하지, ‘30일 이내에’ 이렇게 너무 부담을 주는 것 아닌가……

○허영 위원 ‘신속히’라고 하는 게 좋겠네요.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다른 예를 보면 ‘지체 없이 보고한다’ 이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박수영 위원 하여튼 단어를 찾아 가지고, ‘지체 없이’ 하면 바로 해야 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소위원장 정태호 차관님, 2항은 그대로 두되 30일 날짜를 적지 말고 ‘신속히’로 하든 용어를 선택해 가지고 다시 정리해서……

○재정경제부제1차관 이형일 예.

그러면 첨언 하나만 더 하면요 국회하고 관계니까 ‘운영위원회’보다 ‘정부’로 하는 것도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부에 제시하는……

○박상웅 위원 그래야지, 맞아.

○소위원장 정태호 그러시지요.

○강승규 위원 그렇지요. 정부로 하는 게 맞지요.

○소위원장 정태호 다음.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다음, 성과목표 설정 및 평가에 대한 부분인데요. 핵심 성과지표, 성과목표 설정 및 평가 조항에 대해서 정부는 삭제 의견이고요. 저희 수석전문위원실 의견은 연차보고서에 개별 사업에 대한 성과 평가가 포함이 돼 있는데요, 다음 페이지 보시면 연차보고서 포함 사항에 ‘전략적투자 성과보고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성과 평가 부분을 정일영 의원안을 반영해서 괄호에다가 ‘개별 전략적투자 사업에 대한 성과 평가를 포함한다’ 이렇게 연차보고서 포함 사항에만 수정을 하고 성과 평가에 대해서 별도로 조항은 안 뒀도 연차보고서 수정으로 같음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정태호 어떤가요?

○재정경제부제1차관 이형일 수용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정태호 위원님들 동의하시나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이요.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사업관리위 심의 비용에 대한 공사 지원 부분은 공사가 아닌 기금으로 하도록 돼 있고요. 정부의 위당은 4항에서 ‘1항 1호, 2호, 6호의 검토와 직접 관련하여 발생하는 비용에 대해서는 기금을 통해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라는 위당이고요. 수석전문위원실 의견은 ‘1항 1호·2호 및 제6호의 검토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직접적 비용에 대해서는 기금을 통해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정태호 정부요.

○재정경제부제1차관 이형일 수용입니다.

○소위원장 정태호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이요.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다음에 사업관리단 소속 및 전담기관 지정에 대해서 정부는 사업관리단에 대해서 1항에서 ‘사업관리위원회의 운영, 전략적투자 대상 사업 발굴, 전략적투자 사업의 국내외 관리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산업통상부에 사업관리단을 둔다’. 그리고 2항에서 ‘사업관리단은 사업관리위원회의 검토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조사·연구 의뢰, 전문가 및 계약 관리 등 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전담하여 관리하는 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고 3항에서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대령으로 위임하고 있습니다.

수석전문위원실 의견은 원래 안과 똑같이 1항은 사업관리위원회 운영이라고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포괄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사업관리위원회의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사업관리단을 둔다’라고 했고 전담기관에 대해서 정부안에서는 전담기관을 두는 이유가 조사·연구 의뢰, 전문가 및 계약 관리 등을 위해서 전담기관을 둔다고 돼 있는데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조사·연구 의뢰라든가 전문가 및 계약 관리를 위해서 별도의 전담기관을 두는 것은 좀 적절치가 않고 사업관리단을 구성함에 있어서 어차피 실무 직원들도 구성이 되기 때문에 조사·연구 의뢰, 전문가 및 계약 관리 이런 것은 사업관리단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 맞다라고 봐서 전담기관 지정에 대해서는 제외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정태호 정부 입장이요.

○산업통상부차관 문신학 어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투자지원단 부분 쪽은 여러 가지 다른 조직들이 계속 많이 조성되는 것 아니냐라는 지적에 대해서 저희들이 당연히 수용하고 그래서 투자지원단과 관련된 조항은 전부 다 삭제했습니다.

다만 전담기관 지정 부분에 대해서 수석전문위원실 의견이 보통 일반적인 사안에 맞는 말씀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 부분을 간곡히 넣었으면 하는 건의를 드리는 이유가 임시 추진 체계를 하면서 무역보험공사를 데리고 일을 하려고 하다 보니 무역보험공사도 자기들도 전혀 없었던, 지금까지 사례가 없었던 일을 이제 처음 하면서 여러 가지 걱정을 하고 어려워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전담기관을 새로 설정하는 게 아니라 이미 있는 무역보험공사를 전담기관으로서 할 수 있는 역할을 주고 그게 법적 근거가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으면 무역보험공사가 전담기관으로서 해야 할 일들을 의무와 권한을 가지고 명확히 할 수 있게 해 주십사 하는 취지입니다. 투자지원단과 관련된 것은 다 삭제를 하되 전담기관과 관련된 규정은 정부안대로 유지가 됐으면 하는 건의를 드립니다.

○차규근 위원 원론적으로는 수석전문위원님 말씀이 맞는 것 같은데 또 차관님 말씀 들어 보면, 저희가 오전에도 투자공사를 별도로 설치할 것이냐 말 것이냐 관련해 가지고 기존에 있는 KIC나 무보의 노하우나 인력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지 않나, 거

기에 대해서는 공감대가 형성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실무를 추진할 산자부에서 간곡히 전담기관의 경우는 필요한 경우 둘 수 있다고 하는 거니까 기존의 노하우나 인력들을 활용하는 차원에서는 수용해도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소위원장 정태호 박수영 위원님.

○박수영 위원 산자부가 일하는 방식이 다른 부처하고 좀 다른 것이 늘 보면 공무원들은 계획만 세우고 전담기관을 지정해서 운영을 해서 일은 거기다가 덤터기로 썬우는 이런 방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저도 산업위 2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들어 보니까 전담기관을 맡기고 싶은 무보는 ‘자기들도 잘 모르는데’ 이런다는 것 아니에요, 차관님 말씀이. 모양이 뻔합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산업부가 진짜 총대를 메고 무보를 포함한 기관의 사람들을 파견받아서 사업관리단을 구성하는 게 맞는데 지금 차관님 말씀을 들어 보면 사업관리단은 공무원 구성해 놓고 실질적인 일은 무보에다 덤터기 썬운다 이런 방식이라고 보여지는데 진짜로 필요하다면 법률에 넣기보다는 ‘사업관리단의 설치·구성·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하고 알아서 정해서 하시면 될 거다. 그러나 책임은 산업부가 져야 되는 상황이고요.

저는 전담기관까지 법률에 넣는 건 좀 과하고 2항에 ‘사업관리단의 설치·구성·운영’ 해 놓고 전담관리단은 자기들이 운영하든지 말든지 하면, 꼭 필요하다면 그렇게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강승규 위원 동의합니다, 박수영 위원님.

○소위원장 정태호 그런데 그렇게 했을 때 실질적으로는 대통령령으로 전담기관을 활용할 수 있다라는 취지인 것 같은데, 그리고 제가 볼 때 아마 산업부 입장에서는 현재 무보를 활용하고 있는데 계속 활용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필요로 한다 그런 취지로 저는 이해가 되는데요.

○산업통상부차관 문신학 그런데 솔직히 저희들이 무역보험공사를 이미 임시 추진 체계에서 활용을 하고 있으니까, 무역공사법도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법에 이런 근거규정이 있으면 향후에 무역보험공사가 그러한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무역공사법과의 관계가 어떻게 되냐 하는 부분도 아예 딱 깨끗하게 정리하면서 같이 일을 할 수 있는 구조가 될 수 있으리라고 저희는 희망하고 있습니다.

○박수영 위원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 전담기관이라는 표현이 아니라 무역보험공사를 넣어야 무역보험공사법하고 충돌을 막을 수가 있지 여기 전담기관 해 놓고, 전담기관 지정은 산업부가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에 무보법하고 충돌을 막을 수 있다? 그건 법체계상 맞지 아니하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박상웅 위원 ‘무보 등 관련 기관으로부터 인력을 파견받을 수 있고 별도의 기구를 구성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기관이라고 하지 말고 그것은 산자부에서 운영을 하는 걸로……

○박수영 위원 아니, 제 말씀은 원칙적으로는 산자부가 직접 무보를 부르고 수출입은행도 부르고 다 불러 가지고 해야 되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태도로 봐서는 그냥 무보에 떠넘기겠다고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반대하는 거고. 굳이 그렇게 하고 싶으면 법률에 넣지 말고 시행령에 운영에 관한 조항을 넣어 가지고 하시라고요, 산업부장관이

책임지고 하시라고.

○**산업통상부차관 문신학** 산업부가 정말 책임지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임시 추진 체계를 벌써 한 2개월 정도를 구성해 가지고 계속 같이 일을 하다 보니까 법령 근거 부분 쪽이 있어야 깔끔하게 정리하면서 일을 정말 열심히, 이 중요한 일을 무보한테 절대 맡길 수도 없습니다. 같이 협업하면서 산업부가 책임지고……

○**소위원장 정태호** 자, 이렇게 하지요. 그 부분은 간사 간 협의를 통해서 정리할게요.

○**산업통상부차관 문신학** 예,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정태호** 다음.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기금의 재원에 관한 부분입니다.

기금의 재원의 경우에 정부는 1·2·3·4호는 그대로 두고요 5호에 ‘정책금융기관에 대한 차입금 및 출연금’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을 정책금융기관뿐만 아니라 전체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차입금으로 수정을 하였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수석전문위원실 의견은 그동안 대령으로 정하는 재원은 삭제가 필요하다고 보았고요. 차입금은 자금 유통상 유지하는 게 필요하다고 보았고 산은·수은·무보로부터의 차입금·출연금 중에 차입금은 유지하되 출연금은 우회 출연이 있기 때문에 삭제가 필요하다고 보았고요.

4항 법인·조합·단체 등의 출연금 이 부분은 논의가 아직 안 끝난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소위에서 결정을 해 주실 필요가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정태호** 정부 입장이요.

○**재정경제부제1차관 이형일** 정부 의견은 제시해 주신 대로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출연금은 삭제를 했습니다. 그런데 정책금융 차입의 부분은 저희가 생각해 보니 정책금융기관 외에도 일반 금융회사로부터의 차입은 가능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금융기관의 차입금’으로 수정을 하고 나머지 대령이나 법인의 출연금은 일단 현행 유지를 건의드립니다.

○**소위원장 정태호** 위원님들.

○**강승규 위원** 지난번에도 법인·조합·단체 등의 출연금은 삭제하자는 것이지 않았나요? 그때 그렇게 의견이 모아지지 않았나요?

○**차규근 위원** 모아지지는 않고 좀 이견이……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명확하게 결론은 안 났습니다.

○**강승규 위원** 저는 삭제해야 한다고 봅니다.

○**허영 위원** 저는 유지 입장인데요, 일본도 그런 룬이 있는 거고…… 또 법인·조합·단체…… 조합이라고 하는 것이 제2금융기관도 조합 형태를 띠고 있는 금융기관들도 있는 거고 공제조합도 있는 거고 대규모의 자금을 가지고 있는 다양한 조합들도 출연해서 충분히 기회를 갖는 것도 좋다고 생각을 하고. 또 정부보다 대부분의, 제가 봐서는 운용 수익하고 이런 것들 하면 여기에 부담을 줘 가지고 각출할 수 있는 규모의 포션들은 굉장히 적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출연금 조항은 유지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정태호** 공사의 출연금 얘기하신 거예요?

○**허영 위원** 예.

○박지혜 위원 6호 법인·조합·단체 출연금.

○박수영 위원 출연금이 가서 기회를 갖는 것이 아니고 아무 이득을 받지 아니하고, 출자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농협이 농업협동조합이니까 돈을 내는데 출연만 하는 거거든요. 농협이 냈다고 해서 수익을 가져가는 게 아닌 상황이거든요. 법인은 예를 들면 ‘삼성전자, 너희들 많이 벌었으니까 내’, 이런 거는 출연하는 거거든요. 삼성이 한 푼도 못 벌어 가는 거예요. 저는 그런 구조 때문에 법인·단체·조합으로부터의 출연은 강요될 우려가 있다, 이런 염려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었습니다.

○차규근 위원 저는 정부 의견대로 두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박수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상법이 또 개정돼서 이사의 충실의무,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 같은 조항도 도입이 됐기 때문에 만일에 회사에 손해를 끼치는 그런 상황에서 출연을 하는 걸로 결정을 하게 되면 이제는 막대한 손해배상 이런 책임을 지는 상황으로 구조가 바뀌었기 때문에 너무 과도하게 우려하지 않으셔도 되지 않을까, 그리고 자체적으로 출연하는 것이 그 법인에 자체적인 이익이 되는 걸로 판단해서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을 미리 문을 다 닫아 놓을 필요는 없지 않은가 그런 생각입니다.

○강승규 위원 3500억 불 중에서 이미 1500억 불은 마스가 등에서 기업들이 다 투자를 하게 돼 있고 그리고 또 별도로 기업들이 미국에 투자하는 것들도 부담을 느끼고 있는데 지금 정부가 조달하게 돼 있는 2000억 이런 부분까지 법인·조합 이렇게 해서 ‘등’으로 열어 놓을 경우 기업이나 조합 이런 데 과도한 부담이 갑니다. 결국 정부가 이걸 기업들한테 떠넘긴다는 그런 뉘앙스를 주기 때문에 이 부분은, 큰 실익도 없는 걸 여기다 뒀서 아까 박수영 위원님이 얘기한 것처럼 출연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업들한테 과도한 부담을 줄 필요 없다, 삭제해야 된다고 봅니다.

○소위원장 정태호 아니, 정부가 ‘법인, 조합, 단체 등의 출연금’ 삭제하는 걸 동의한 것 아니에요?

○재정경제부제1차관 이형일 아닙니다.

○소위원장 정태호 자, 정부안을 중심으로 이렇게 정리해 볼게요, 쟁점을 정리하기 위해서.

‘공사의 출연금’에 대해서는 다들 동의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위탁기관으로부터 기금의 재원으로 사용하는 것에 사전 동의를 얻은 위탁자산’ 다 동의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다음에 ‘제2항에 따른 한미전략투자채권을 발행하여 조성한 자금’ 다 동의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정부로부터의 차입금’ 다 동의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차입금’ 다 동의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다음에 ‘법인, 조합, 단체 등의 출연금’은 쟁점이지요. 그렇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다음에 ‘기금 운용수익 및 그 밖의 수입금’ 다 동의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원’ 반대지요?

정부, 빼도 상관없어요?

○재정경제부제1차관 이형일 저희는 유지를 원합니다.

○소위원장 정태호 유지?

○재정경제부제1차관 이형일 예.

○소위원장 정태호 그러면 이게 또 쟁점이네. 그러면 결국은 6호하고 8호가 쟁점이네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래서 ‘법인, 조합, 단체 등의 출연금’에 동의·반대가 있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원’을 유지할 거냐 뺄 거냐. 이걸 위원님들 간에……

○박지혜 위원 어차피 조정하실 것 같아서 그냥 의견만 남겨 놓으면요 저희가 공청회 때도 이 조항과 관련해서 전문가 의견을 들었는데 외평기금을 운용하는 수익을 주요 재원으로 할 것이고 그게 거의 충분할 것이라고 예상이 되지만 만약에 부족한 경우에는 여러 가지 다른 용도의 그런 기금들을 가용하도록 만들어 놓는 게 중요하다, 그게 외환시장의 안정을 위해서도 중요한 시그널을 준다는 취지로 전문가도 발언하신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저희 국익을 생각한다면 그냥 다양한 재원을 열어 놓는 것이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정부 의견에 찬성합니다.

○소위원장 정태호 다른 재원이 들어온다라는 것은 한국은행으로부터 가져오는 걸 줄일 수도 있다라는 취지인 거지요?

○박수영 위원 모자랄 경우에 그렇게 하겠지요.

○소위원장 정태호 그러니까 모자라는 경우에 가져올 수 있고 그다음에 이게 들어오면 덜 가져올 수도 있고 그렇다는 얘기 아니에요?

○박지혜 위원 예.

○재정경제부제1차관 이형일 자발적으로 하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받을 구멍은 있어야 됩니다.

○소위원장 정태호 그러면 이것은 어차피 위원님들 간에도 합의가 안 되니까 간사 협의로 넘기겠습니다.

다음요.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기금의 계정 구분입니다.

정부안을 보시면 1항·2항은 똑같으니까 생략하고요. 3항에 대해서 정부안은 ‘기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미투자계정 및 조선협력투자계정으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4항은 ‘계정 상호 간 일시적 여유자금 불균형 해소를 위해 전입·전출이 가능하며, 이 경우 공사는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5항은 ‘4항에 규정된 계정간 전입·전출의 요건·절차 등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6항은 생략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의견을 보시면 3항은 마찬가지로 ‘기금은 대미투자계정 및 조선협력투자계정으로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4항의 경우 정부의 경우 ‘전입·전출’을 썼는데

‘전입·전출’을 쓰지 않고 ‘예수·예탁’을 썼는데 전입·전출은 한 번 들어가면 그게 안 나올 수 있는 거니까…… 예수·예탁은 예수를 받으면 다시 갚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계정 간 자금이 혼재되지 않도록 ‘예수·예탁’을 썼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5항에서 4항 단서에 따른 예수 또는 예탁의 요건·기간·이자율 등 세부사항과 그 밖의 사항은 대령으로 위임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정태호 그러니까 결국은 계정은 2개로 나누는데 전입·전출이 가능하게 할 거냐 불가능하게 할 거냐의 문제가 있고 불가능한 경우에는 예수·예탁은 가능하다, 그런 거지요?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전입·전출로 하면 이게 자금이 섞이니까요 예수·예탁 해서 갚아야 된다는 거지요.

○소위원장 정태호 정부 입장이에요.

○재정경제부제1차관 이형일 수석전문위원 의견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정태호 동의해요?

○재정경제부제1차관 이형일 예.

○소위원장 정태호 다음.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기금 운용 용도의 대령 위임 여부입니다.

정부는 기금 운용 용도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 것 외에도 대령으로 위임하도록 원안 유지 입장이고요.

수석전문위원실 입장은 기금 자체가 외환 보유고를 통해 가지고 운용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 기금의 목적이 대미투자랑 조선협력 투자로 명확하기 때문에 다른 용도를 행정부 재량으로 위임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의미에서 대통령령 위임 규정은 삭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재정경제부제1차관 이형일 어제 이것에 대해서 ‘대통령령으로 뭘 할 거냐, 상정할 게 있느냐?’라고 여쭙보셨는데요. —————

—————

—————

—————

이 말씀은 속기록에서 좀…… 보시고 판정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소위원장 정태호 이것은 간사 간에, 넣을게요. 넣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재정경제부제1차관 이형일 제 발언을 속기록에서 좀……

○소위원장 정태호 속기록 지워 주세요.

‘속기록 지워 주세요’라는 말도 속기가 되나요? 그건 아니지요?

(웃음소리)

다음이요.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다음, 6페이지입니다.

공사경영 관련 자료의 공고에 관한 부분입니다.

공고 규정을 두기로는 합의를 해서 정부 의견은 공고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1·2·3호

를 했고 그 이외에 수석전문위원실 의견은 2항을 추가해 가지고 ‘공사는 회계연도마다 위탁받은 자산에 대한 공사의 자산운용실적 등과 관련한 다음 각호의 자료를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그래서 ‘총 자산운용규모’, 두 번째 ‘총 자산에 대한 운용수익률’, 세 번째 ‘대령으로 정하는 자산군별 구성비 및 수익률’, 네 번째 ‘운용전문인력의 변경’ 해 가지고 2항을 추가하는 게 수석전문위원실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정태호 정부 입장이요.

○재정경제부제1차관 이형일 저희가 세 가지 자료를 공고하기로 했는데요. 저희가 볼 때는 세 번째 ‘전략적투자 추진현황’에 2항에 있는 내용을 담을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이 3호 안에 다 녹여서 할 수 있으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첫 번째 총 자산운용규모는 당연히 전략적투자 추진현황에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산군별 구성비 이것은 사업 베이스에서 하는 거라서 저희는 자산군별로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사업군별 구성비로 생각해서 그건 넣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운용전문인력의 변경은 사실은 이게 어떤 전문경영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그렇지만 저희 공사에서는 이렇게까지는 필요가 없지 않을까 싶어서 전략적투자과 관련된 현황만 추가하려고 하고요. 다만 남은 것은 수익률 부분인데 수익률은 저희도 좀 고민이 되는 부분이라서 여기서 같이 논의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당분간은 수익률이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큰 상황이라서, 이게 어차피 저희가 1년마다 정기 보고를 할 텐데, 국회에는 다 보고가 될 것 같습니다. 이걸 인터넷 공시까지 이렇게 할지, LP·KIC 같은 이런 투자자에 대해서 공고 의무랑 같이하는 게 필요할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정태호 전문위원님 의견 주시지요.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이 부분은 KIC에 규정된 부분을 그냥 따온 겁니다, 인용한 거고. 자산군별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사업군별 구성으로 바꾸는 것은 적절하다고 보고요. 수익률에 대해서는 그것은……

○소위원장 정태호 그런데 수익률을 공개해야 오히려 정부가 협상의 레버리지로 쓸 수 있는 것 아닌가? 그런 것 같은데.

○강승규 위원 수익이 나든 안 나든 공개를 해야……

○박수영 위원 2항이 KIC 한국투자공사법에 나와 있는 걸 그대로 인용한 거라는 것 아닙니다.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예, 그렇습니다.

○박수영 위원 한국투자공사도 국가자산을 운용하면서 이걸 다 공개하는데 왜 한미투자공사는 안 하느냐 지금 이런 얘기가 되잖아요. 그렇지요?

차관님, 똑같이 맞춰서 하는 게 문제가 있습니까, KIC도 다 하는데?

○재정경제부제1차관 이형일 초기에는 별로 들어오는 게 없을 것 같아서 그걸 공시하기 좀 부담스럽긴 한데요, 위원님 말씀 주시면 따르겠습니다.

○소위원장 정태호 그렇게 설명을 해야 오히려 정부가 더 떳떳할 것 같은데?

○재정경제부제1차관 이형일 그러면 4호는 빼고 3호의 자산군을 사업군별로 바꿔서 수정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정태호 그렇게 하지요. 그러면 4호 빼고 운용수익률하고 사업군별로 하는 걸로.

(「예」 하는 위원 있음)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다음은 분쟁조정에 대한 부분입니다.

정부 의견 말씀드리면 1항에서 ‘이 법에 따라 체결되는 투자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정부는 분쟁의 신속하고 원만한 해결을 위하여 한미 협의위원회 등을 통해 협의 및 분쟁 조정을 우선적으로 추진한다’. 그리고 2항 부분은 산업부차관이 말씀하신 취지에 따라서 제외하였습니다.

저희 의견은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정태호 그러면 그대로 가면 되겠네요. 그렇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넘어갑니다.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다음으로 7페이지 자료 공개 부분입니다.

정부 의견은 ‘정부 및 공사는 공사, 운영위원회, 사업관리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보유·관리하는 자료는 원칙적으로 공개한다. 다만,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국민경제의 발전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거나 영업비밀 등 기업의 경영활동을 보호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라고 돼 있고요. 2항에서는 ‘누구든지 공사, 운영위원회, 사업관리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자료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로 규정하고 있고, 3항에서는 ‘정부 및 공사는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국회 소관 상임위가 그 의결로 자료를 요구하는 때에는 비공개로 전제로 열람하도록 하거나 보고할 수 있다’. 그리고 4항에 대해서는 ‘3항에 따라 열람하거나 보고를 받은 사람은 그로 인하여 알게 된 내용을 공개 또는 누설해서는 아니된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고요.

수석전문위원실 의견은 1항은 똑같고요. 2·3항도 똑같고요. 다만 지난 소위 논의할 때 4항 ‘제3항에도 불구하고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가 해당 자료의 공개를 의결할 경우, 정부 및 공사는 그 자료를 공개하여야 한다’라는 부분이 논의됐기 때문에 집어넣었고요.

정부안 4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5분 전에 받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정경제부제1차관 이형일 저희는 일단 1·2·3항은 다 동일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석전문위원이 제시하신 4항은 오전에 잠깐 빠르게 논의가 돼서 제가 다 답변을 못 드렸는데요. 기본적으로 이것은 국가의 안전보장이나 영업비밀이나 이런 걸 통해서 저희가 비공개로 생각하고 국회에서 소관 상임위 의결로 요구를 하면 비공개로 열람해 드리고 있습니다. 보신 다음에 다시 의결을 통해서 공개를 결정하면 그걸 공개하도록 하는 것은 생각보다 굉장히 강한 내용으로 사실 이 내용들이 또 여러 가지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도 있고 논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열람으로서 저희가 정보를 충분히 제공한 게 아닌가 생각하기 때문에 4항의 신설에 대해서는 저희는 신중하게 검토해야 된다 이런 입장입니다. 그리고 저희 쪽 4항 누설 방지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정태호 위원님들 의견이요.

○차규근 위원 정부 입장이 설득력이 있는 것 같고요. 다만 오른쪽의 수정의견 4항이 ‘제3항에도 불구하고’로 돼 있는데 ‘1항에도 불구하고’의 오타인 것 같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아닙니다. 3항입니다. 3항에서 비공개로 열람한 것에 대해서 국회 상임위가 판단할 때 비공개 사항이 아닌데 비공개로 지정됐기 때문에 상임위원회 의결로 비공개로 지정한 사항에 대해서 이것은 공개해도 된다고 판단할 경우에 여야 의결로 그걸 공개한다는 얘기입니다.

○소위원장 정태호 제 생각에는 이 4항은 대단히 정치적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한 20년 동안 간다고 보면 예를 들어서 야당이 다수당이 됐을 때 공개를 요구했을 때 의결해 버리면 그냥……

옛날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문재인 대통령 때인가 노무현 대통령 때 서해 NLL 관련 합의 사항이 있었거든. 그것 가지고 막 그래 가지고 나중에 회의록까지 공개되고 그랬잖아요. 그게 남북관계에 엄청 치명타가 됐었어요. 그래서 국가안전보장 또는 국민경제 발전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기 때문에 비공개로 열람까지는 해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회의원은 비밀에 접근할 수 있는 권리가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해 주는데 이것을 공개를 결정하는 것은 나중에 정치적 논란에 빠질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볼 때는 4항은 아니라고 봐요.

○박수영 위원 이 조항하고 그다음 조항은 아마 수석전문위원실에서 시간이 없어 가지고 제대로 못 본 것 같으니까 한 번 더 검토할 시간을 주고 우리 간사회의, 소소위에서 정하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소위원장 정태호 예, 그럼시다.

○박수영 위원 제대로 검토를 못 했다고 적혀 있는 것 아닙니까?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예, 1항에 있어서도 국가안전보장은 충분히 인정이 되는데요 국민경제 발전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는 것을 보니까 이 부분은 너무 포괄적이어 가지고 이 부분은 수정이 필요할 걸로 보입니다.

○재정경제부제1차관 이형일 이것은 아침에 논의할 때 국익이라는 게 필요한데 너무 브로드(broad)하니 문구를 다듬으라고 해서 저희가 넣은 위당이었습시다.

○소위원장 정태호 이것은 간사 협의로 넘기고 검토해 주시지요.

○박수영 위원 다음 조항도 마찬가지로요? 이것도 추가 검토 필요하다고 한 것 아닙니까?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일단 국회에 대한 사전보고인데요 이 부분도 같은 내용이니깐 같이 묶어 가지고 간사 협의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정태호 정기보고, 중대 사유 수시보고.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국회에 대한 정기보고입니다.

정부안을 보시면 1항에서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해야 된다’ 해 가지고 1호는 기금의 관리·운용보고서, 2호는 경제 및 산업 영향평가보고서, 3호는 투자 추진현황 및 성과보고서를 열거하고 있고요.

2항에서는 ‘정부·공사는 기금 운용 구조의 중대한 변경, 대규모 손실 발생 등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정부가 국회 소관 상임위에 보고한다’ 이

렇게 규정이 되어 있고요.

3항에서는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는 1항에 따라 제출한 내용에 대해서 필요한 경우 정부·공사 및 관계기관의 장에게 설명을 요청할 수 있으며 정부·공사 및 관계기관의 장은 성실히 응해야 된다’ 이렇게 규정이 돼 있고요.

수석전문위원실 의견을 말씀드리면 1항에서 연차보고서에 들어갈 사항에 대해서 1호는 똑같고요 2호의 영향평가에 대해서 조금 자세하게 ‘국내 경제·재정·관련 산업·고용 및 외환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포함한다’고 구체적으로 명시했었고요. 3호는 전략적 투자 추진 현황 그다음에 4호는 전략적 투자 성과보고서인데 아까 성과평가에 대한 사항을 다 집어 넣어서 괄호 안에 ‘개별 전략적 투자 사업에 대한 성과평가를 포함한다’라고 정했고 5호는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대령으로 위임했습니다.

그다음에 2항에서 정부 및 공사는 정부안에서는 주체가 명확하게 돼 있지 않기 때문에 2항에서 정부 및 공사가 판단하기에 중대 변경이나 손실 발생 등 중대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 소관 상임위에 보고하도록 규정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정경제부제1차관 이형일** 지금 보면 2항은 동일한 내용 같습니다. 그리고 3항은 논의하셔서 추가하시면, 특별하게 국회의 권한을 명시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큰 이슈는 없는 것 같습니다. 1항에 대해서는 주체는 동일해졌습니다. 다만 보고서 내용인데 보시면 1호는 똑같고 아까 말씀드린 2호에 대해서 저희는 ‘경제·재정·관련 산업·고용·외환’ 이렇게 너무 막 나열이 돼 있어서 이걸 간단하게 묶어서, 종합해 보면 결국은 경제하고 산업이 가장 중요한 의미가 있으니까 내용을 쓰다 보면 다른 이런 것들이 포함되지 않을까 싶어서 콤팩트하게 경제·산업 영향보고서로 추진했었고요. 저희 쪽 3호는 수석전문위원 의견의 3·4를 묶은 겁니다. 그런데 다만 성과보고서의 단서를 괄호를 넣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괄호를 추가하면 되기 때문에 3·4로 찢든 붙이든 저희는 의견은 없습니다. 대령 추가하는 건 수용합니다.

○**소위원장 정태호** 내용상으로 보면 크게 다르지는 않은데.

○**강승규 위원** 그러니까 2번을 어떤 표현을 쓸거냐라는 거네.

○**박수영 위원** 2호는 정부의 의견을 받아 주고 3호·4호는 수석전문위원의 의견대로 쪼개는 게, 괄호가 있기 때문에 조문 편의상 좀 그게 낫지 않겠나 하는……

○**소위원장 정태호** 그러니까 2호는 정부 거로 받고?

○**박수영 위원** 예, 3호·4호는 수석전문위원 것 받고.

○**소위원장 정태호** 그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수영 위원** 그다음에 5호는 어떻게 해요?

○**소위원장 정태호** 수용했잖아요.

○**박수영 위원** 수용했습니까? 오케이.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다만 저도 이 자료를 처음 봐서, 주체에 있어서 정부 및 공사로 돼 있는데요 제가 검토를 못 했는데 이걸 정부로 그냥 단일화하는 게 좀 더 낫다고 판단이 됩니다. 주체를 둘로 나누는 것은 조금 부적절하고 정부가 책임을 지고 공사의 자료

도 정부가, 연차보고서니까 정부가 책임을……

○박수영 위원 그것은 아까 소위에서 그렇게 보고했던 것 같은데, 검토했던 것 같은데.

○재정경제부제1차관 이형일 그런데 국회에 보고할 때는 정부가 되는데 이 자료 자체는 공사 연차보고서거든요.

○강승규 위원 아니, 그러더라도.

○재정경제부제1차관 이형일 보고서 작성 주체까지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각 호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는 주체는 공사가 작성하게 되는 겁니다. 다만 아침에 정부가 역할이 없다고 하니까 저희가 같이 앤드(and)를 넣은 건데 공사를 아예 빼 버리면 공사가 할 일을 정부가 하게 됩니다.

○허영 위원 같이 넣어 주시지요.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그런데 전략적 투자의 경우에 연차보고서를 내는 건데 그 주체를 정부하고 공사로 두는 것은 누가 작성하든 간에 최종 책임 주체를 명시해야 되기 때문에 전략적 투자의 어떤 전체적인 큰 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함에 있어서 공사가 국회에 보고하는 주체로 들어가는 것은 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박수영 위원 그러면 ‘작성하여’를 빼면 안 됩니까? ‘정부는 다음 각 호에 대한 보고서를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는 거지. ‘작성하여’를 빼는 거지. 그러면 정부가 직접 작성은 못 할 것이고 공사에서 작성하고 받아서 기재부장관이 와서 보고하면 되는 것 아닌가요?

○재정경제부제1차관 이형일 그런데 기본적으로 기금의 운용 주체가 공사인데요 국회에서 부를 때 정부가 나가는 건 맞는데 기금의 운용 주체가 법적 성격이 있는데 정부로 제출하는 게 대리 제출처럼 되는 것 아닙니까? 엄연히 법적으로는 공사가 기금을 관리하고 있는데.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기금 관리·운용뿐만 아니라 전략적 투자의 영향평가 부분이라든가 전략적 투자 추진현황, 성과평가 부분은……

○강승규 위원 단순히 기금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그러니까 기금 관리·운용뿐만이 아니라 전략적투자에 대한 영향평가라든가 전략적투자 추진현황 등을 포괄하기 때문에 각 호별로는 공사가 그 주체가 될 수는 있지만 전체적인 연차보고서를 공사하고 정부하고 공동으로 주체로 하는 것은 체계상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강승규 위원 이건 정부가 맞습니다. 국회에 대한 정기보고를 공사가 한다는 건 말이 안 되지요.

○재정경제부제1차관 이형일 이건 보고서의 제출입니다, 직접 보고를 하는 게 아니고. 필요하면 보고는 부르면 저희가 당연히 가게 돼 있고요, 서류의 제출입니다.

○소위원장 정태호 그러면 ‘제출’이 걸리면 ‘보고하여야 한다’라고 바꾸면 되잖아요.

○강승규 위원 보고서를 제출하는 것, 이 조항의 정의는 국회에 보고한다는 것을 규정하는 항목이잖아요. 그런데 보고의 주체가 정부가 돼야지 갑자기 정기보고 주체가 공사로 되느냐 이거지요.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그런데 다른 입법례를 보더라도 수은이 공급망기금을 운용하고 있는데 그 기금에 대한 연차보고서도 제출은 재정경제부가 하도록 돼 있습니다.

○재정경제부제1차관 이형일 아, 그렇습니까?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예.

○소위원장 정태호 그러니까 이것은 논리적으로 보면 국회와 정부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것을 정부로 표현하는 게 제가 봐도 그게 맞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굳이 작성의 주체를 표현해야 된다면 모르겠지만, 그러면 법이 막 누더기가 되니까.

○재정경제부제1차관 이형일 저희가 조금만 더 생각했다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례를 더 보겠습니다.

○박수영 위원 다른 법을 보고 수석님하고 차관님이랑 같이해서 의논해 가지고 다시 소소위에 주십시오, 문구를 수정해 가지고.

○재정경제부제1차관 이형일 예, 그러겠습니다.

○소위원장 정태호 소소위에서 결정할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회의록 작성 및 제출.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회의록 작성 및 제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 의견은 ‘운영위원회, 사업관리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2항은 ‘제1항의 회의록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가 요구할 경우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안전보장 또는 국민경제의 발전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거나 영업비밀 등 기업 경영활동을 보호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이 돼 있고요. 3항에서는 ‘2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국회 소관 상임위가 그 의결로 제출을 요구할 때에는 비공개로 전제로 열람하도록 하거나 보고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하고 4항은 ‘3항에 따라 자료를 열람 하거나 보고를 받은 사람은 그로 인하여 알게 된 내용을 공개·누설해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자료 작성 5분 전에 정부로부터 받아 가지고요 수정 의견은 저희가 좀 검토를 해야 될 것 같고요. 회의록은 공개된 부분은 요구할 경우 제출한다고 돼 있는데요 회의록 부분은 저희가 다시 검토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간사 협의 때 의견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정태호 그렇게 하시지요. 급하게 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생기지요.

그러면 소소위로 넘어가는데, 정부 문구 정리 후 보고……

○박수영 위원 저기서 다 정리 잘했을 겁니다. 넘기기로 한 건 넘기면 됩니다.

○소위원장 정태호 그러면 내가 다시 정리 안 해도 되지요? 정리해 가지고 소소위로 넘기면 소소위에서 정리해 가지고, 월요일 날 10시에 소위가 예정돼 있지 않습니까? 그때 최종적으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그 사이에 소소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합의한 내용에 대한 자구 정리 등은 소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형일 재정경제부제1차관, 문신학 산업통상부차관님을 비롯한 정부 관계자와 최병권

수석전문위원 등 위원회 직원 그리고 보좌진 여러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2분 산회)

(－－ 부분은 국회법 제118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배부회의록에 게재하지
아니하기로 한 부분임)

○출석 위원(7인)

강승규 박상웅 박수영 박지혜 정태호 차규근 허영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정부측 및 기타 참석자

재정경제부

제1차관 이형일

혁신성장실장 민경설

전략경제정책관 고광희

산업통상부

차관 문신학

통상차관보 박정성

통상정책국장직무대리 김영만

한국은행

국제총괄팀장 김민규